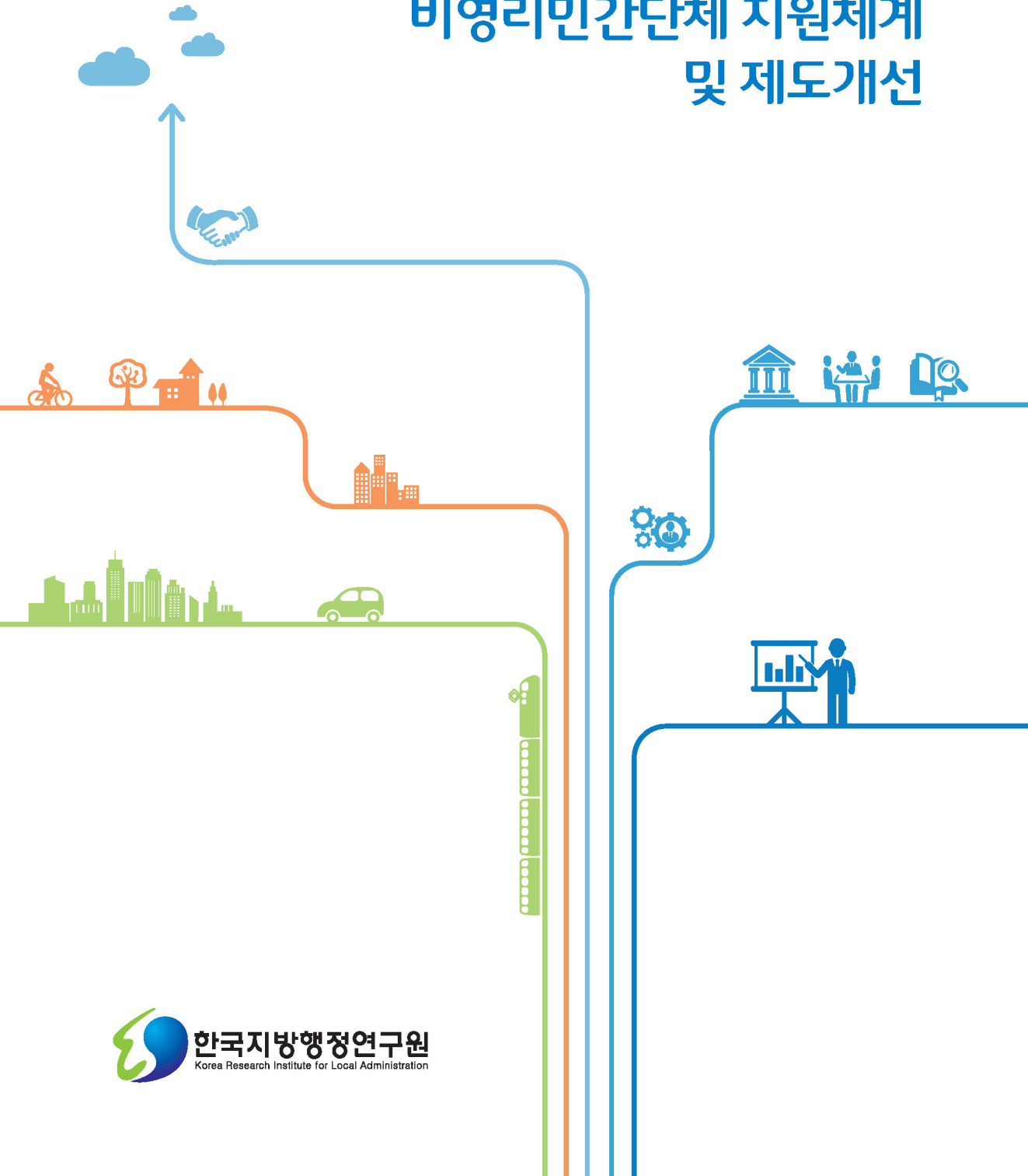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연구진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서론

-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의 관계는 상호간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한 채,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능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원칙과 함께 정부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의 발전적 전망과 더불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정부 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제도적·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된 「2015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관련 해외사례(관련법령 등) 파악
 - 행정자치부 ‘15년 비영리민간단체 집행지침의 적정성 검토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문제점

가. 사업신청단계

- 사업은 매년 1월말 경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지원사업을 공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함
- 공고이후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1개월 동안 심사 후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됨
-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는 전체 지원금의 일부가 5월중 교부되고 이후 사업이 집행됨
- 이후 8월과 9월중에 단체와 주무부서의 일정을 감안하여 실지평가를 포함한 중간평가가 행해지면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나머지의 2차보조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됨
- 이후 단체는 다음해 1월 최종적인 사업보고서와 함께 만족도평가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2월중 이루어지면 1회의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사업기간은 해당 회계연도 1월에서 12월이나, 심사 및 선정은 3-4월에나 이루어지고, 보조금 교부는 5월, 사업결과보고서는 익년 1월 중에 제출, 2월 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익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실제 사업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실정임
- 이러한 촉박한 일정은 담당 주무부서의 사업 준비 및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짧은 사업기간으로는 장기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고경훈, 2006)

나. 사업선정 및 승인단계

- 신청은 사업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사업은 전국 사업과 지역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되는데, 시나 도 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행정서비스나 특정 계층에게만 필요한 공공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적 보충성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
- 신청단계에서 지역사업에 신청하고 전국사업에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중복신청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박천일, 2011: 87)
- 한편, 사업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심의 및 선정하는데 1개월의 짧은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사업선정에 한계가 존재함
-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매년 사업유형을 선정하고 공무한 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심사를 하는데 신청단체는 많은데 비하여 심사위원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밀한 심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박천일, 2011: 88)
- 또한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투명성에 관해 지적할 수 있는데, 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심의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조금 배분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선정의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단체의 영향력이나 인지도, 서류작성 능력 등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될 확률을 높게 되고, 이러한 서류작성은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과 형식에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정부의 기준에 맞추고 훈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Wolch, 1990)

- 따라서 새로 설립된 단체, 작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서류작성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줄게 됨(박상필, 2000)

다. 사업집행 및 관리단계

- 언급한대로, 사업비는 2차에 걸쳐서 교부되는데, 1차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지원결정액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추진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30%를 지급함
-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집행이 경직되어 이를 정부평가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제약이 발생함
-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보조금은 민간단체의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사업집행을 위한 보조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중앙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당 선정액이 평균 4000만원 정도이나, 지방사업의 경우 몇백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쳐 사업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일회성 행사로 사업을 끝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비영리부문의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비영리부문의 자유와 자발성에 대한 제약과 규제가 지나치게 많은 반면, 인프라 구축 등 간접적 지원에 대한 정책은 거의 부재함을 지적할 수 있음

라. 사업보고 단계

- 중간평가와 관련한 문제점은 중간평가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들과 함께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중간점검이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3명 정도이고 대개 기타 민간협력 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함께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의 마찬가지로 사업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점검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박천일, 2011)
-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최종평가 및 사후(종합)평가와 관련하여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사업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서면보고서 검토 → 현지평가 → 최종평가결과 도출 등의 순서로 진행
- 행사 중심의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내용의 충실성이나 성과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보조금의 적법한 사용과 같은 회계평가에 초점을 두기도 함
- 1월에 최종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월에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에 이르기까지 1개월이라는 평가기간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 시비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마. 사업정산 단계

- 사업정산은 사업 종료 후, 회계평가를 통하여 보조금 사용에 있어 부정한 사용이 발견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고 재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진사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방법은 차년도 사업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평가결과는 차년도의 사업선정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차년도 사업의 감점 형태보다는 일정기간 사업신청자격을 유보한다든지 다른 적절한 제재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3. 공익사업 관련 실태조사 결과

○ 사업신청 단계

- 사업신청 단계의 문제점 분석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근거한 사업예산 편성'이 45.0%,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 의무'(26.3%),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16.3%) 순으로 나타남
- 제도개선을 위해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가 30.7%,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단체'(19.7%), '단체활동과 관련되어 불법 시위주도 사실이 있는 단체'(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선정 및 승인 단계

- 공익사업 신청단계에서의 가점과 감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가점 및 감점제도 현행 유지'가 55.0%로 가장 많았고, '가점 및 감점제도 폐지'는 17.3%로 나타남
- 공익사업 추진 시, 사업선정 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부담금액 마련'이 39.7%,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21.3%), '사업수행을 위한 컨소시엄의 어려움'(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행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5%)을 높여 정부의존도를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30.3%, 반대 45.7%로 나타남
- 국가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예산 포함 시 부여되는 가점의 적정선에 대해 '현행 유지'가 38.3%, '가점제도 폐지'(29.0%), '현행보다 가점 확대'(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선정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35.3%, 그 다음은 '사업계획서에만 의존하는 선정'(30.0%), '지역사업과 전국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단체의 선정'(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집행 및 관리단계

- 동일 혹은 유사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는 문제의 해결방법

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강화’가 29.3%, ‘통합 정보망의 구축’(28.3%), ‘이중 지원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익사업 추진 시, 강사로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35.0%, ‘개선 필요’가 65.0%로 나타남
- 강사로 지급 기준의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등급 유지하되 직업 아닌 경력 적용’이 51.3%, ‘현행보다 등급 단순화’(24.1%), ‘현행보다 등급 세분화’(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익사업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절차 간소화’가 41.7%, ‘예산지원 항목의 경직성 완화’(31.0%), ‘보조금의 규모 확대’(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보고 단계

- 공익사업 보고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업의 성과보다는 회계의 적법성 평가우선 문제’가 59.3%,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예산 확보 문제’(16.3%), ‘평가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문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정산 단계

- 보조금 집행 관련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의 소명자료 제출의 복잡성’이 50.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제재 규정의 차이’(24.3%), ‘보조금 환수 판단의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산단계에서 제재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목적·교부 결정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37.3%,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된 경우’(33.0%), ‘증빙서류 및 첨부자료를 통해 집행내역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될 대안

-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규모 확대’가 52.7%, ‘비영리민간단체의 역

량 강화’(44.7%),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이해도 제고’(44.0%) 등의 순
으로 나타남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지원사업 개선의 기본 방향

-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자부담 확대를 통한 사업의 자율성 확보, 둘째, 정부의 민간공익 지원사업 방향의 원칙과 전략에 따른 제도의 통합성 마련, 셋째, 형평성과 공정성 증진,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다섯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여섯째,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의 전환, 일곱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전략적 관점 반영, 여덟째, 시민단체 스스로의 노력 필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행정적 측면 개선방안

- 사업 준비, 선정 단계에서 정부는 지원사업 단체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경계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분야 선정단계에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담당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야 함
- 사업집행 및 관리 단계에서는 예산지원 항목의 경직성 해소 및 증빙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집행지침의 개선,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야 함
- 사업보고 및 정산 단계에선, 보조금의 환수, 반환, 감액의 제재 등을 명령할 때 재량권의 남용을 경계하여야 함
- 그 밖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서비스, 이를 보완할 지원체계의 구축, 통합정보망의 구축을 통한 정보의 공개 확대, 민관협력을 위한 소통의 채널 확대,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부서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요구됨

□ 법적 측면 개선방안

- 상시구성원수의 완화 등으로 통해 정책 대상 집단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할 필요
- 지역 NPO 지원센터와 같은 중립적인 조직의 설립을 법제화함
- 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 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 방식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센터 또는 민관단체 상호간의 참여형 평가기관을 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회계 중심 평가제도를 다변화 함
-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 공간 활용 보장, 통신료 감면 제도, 보조금 지원 외의 세제 혜택 보완, 공공채널을 통한 비영리민간단체 홍보 지원 등의 실효적 지원 규정 보완

5. 정책적 제언

□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완화

- 제2조(정의)의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되, 신생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4. 상시 구성원수가 50인 이상일 것
 - 5. 최근 2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비영리 민간단체 육성의 기본계획 및 지원 계획 수립

- 제3조(기본방향) 조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추상적이므로 비영리 민간단체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을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에 신설
- 지원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독립기구-기본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지원법 제3조의 4를 다음의 내용으로 신설하되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 역시 검토를 통해 신설하여야 함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 근거 법률의 정비

- 보조금은 동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별법이 지원하는 별도의 민간단체에 관한 법률(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폐지 내지 해당 보조금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운영경비 지원규정 마련

- 비영리 민간단체에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만큼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사업비만을 규정하고 있던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
- 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의 근거 없는 운영이 교부를 금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둘 경우 운영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

지원사업 분야의 선정과정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의견 반영

- 지원사업 분야의 선정과정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지원법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 민간단체의 자부담 비율 증가

-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원규모의 확대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원금액이 확대될수록 민간단체는 정부의존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단체가 가능한 독자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자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음
 - 2015년의 경우 의무적 자부담(5%이상) 부과로 비율에 따른 가점을 자부담 10~14% 1점, 20% 이상 3점을 부여하는 등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조율은 2013년 77.7%, 2014년 84.5%, 2015년 85.7%로 증가 일로에 있을 뿐 감축되지 못하고 있고,
 - 2016년 보조율부터 70%로 감축한 후 6년간 5%씩 매년 보조율을 낮추고, 보조금 규모도 매년 5%씩 5년간 30% 수준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음. 다만 타 단체들과의 보조금 감축 수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2016년 보조금 감축 규모를 10%로 함
- 현행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5%)을 높여 정부의존도를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한다’는 30.3%(매우 찬성 13.3%+찬성 17.0%)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24%로 나타났고 자부담 비율 증가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n=91)를 대상으로 증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5%-10%’가 6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5%초과’(19.8%), ‘11%-15%’(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기부금법의 개정, 비영리 민

간단체에 대한 감면과 행정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간접적 방식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현행 법령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간접지원 관련규정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간접적 지원방식으로서의 점진적 전환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제10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통신비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제11조(우편요금 및 통신비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단,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경영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제11조의 2(경영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제11조의 3(교육훈련 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임대료 지원 및 국공유 시설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공익공공채널을 통한 홍보 및 방영을 위한 ‘홍보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제11조의 4(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시설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 국공유 시설 임대 지원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검토하여 무상임대 보다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료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 비영리민간단체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제11조의 5(비영리민간단체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도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인 등의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 제11조의 6(비영리민간단체 발전기금의 조성 등) ①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금융기반 조성 및 비영리민간단체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비영리민간단체의 이론적 논의	9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	11
1.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11
2.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징	13
3.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	15
제2절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17
1.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방식	17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의 효과	19
제3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현황	23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방법 및 형식	25
1. 지원배경	25
2. 현행법상 지원방법 및 형식	26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	30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30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유형	36
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현황	37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절차	49
제3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	57
1. 사업신청단계	57
2. 사업선정 및 승인단계	58
3. 사업집행 및 관리단계	59
4. 사업보고 단계	59
5. 사업정산 단계	60
제4장 해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례	63
제1절 미국	65
1. 단체의 설립 및 등록	65
2. 지도 감독	66
3. 정부의 지원방식	66
제2절 영국	68
1. 단체의 설립 및 등록	68
2. 지도 감독	69
3. 정부의 지원	69
제3절 일본	70
1. 단체의 설립 및 등록	70
2. 지도 감독	72
3. 정부의 지원	72



제5장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실태분석 75

- 제1절 설문조사 결과 77
- 제2절 응답자 현황 78
- 제3절 분석결과 79
 - 1. 사업신청단계 79
 - 2. 사업선정 및 승인단계 82
 - 3. 사업집행 및 관리단계 89
 - 4. 사업보고 단계 93
 - 5. 사업정산 단계 94
 - 6. 기타 96

제6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개선방향 97

- 제1절 기본방향 99
 - 1. 자부담 확대를 통한 사업의 자율성 확보 .. 99
 - 2. 통합성의 제고 100
 - 3. 형평성과 공정성 증진 100
 - 4. 공익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100
 - 5.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101
 - 6.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의 전환 101
 - 7.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전략적 관점 반영 102
 - 8. 시민단체 스스로의 노력 필요 102

제2절 행정적 측면	103
1. 사업준비, 선정 및 승인단계	103
2. 사업집행 및 관리단계	103
3. 사업보고 및 사업정산단계	107
4. 기타	108
제3절 법적 측면	112
1. 정책대상 집단의 자격 요건 현실화	112
2. 지원수단의 전환 및 확대	114
3. 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방식의 전환	115
4. 민간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실효적 지원제도 도입	117
제7장 결론	12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3
제2절 정책적 제언	128
참고문헌	136



표 차례

<표 2-1> 정부지원의 유형에 대한 장단점	18
<표 3-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31
<표 3-2> 중앙행정기관 등록현황	31
<표 3-3> 시·도 등록현황	32
<표 3-4>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유형예시(중앙)	32
<표 3-5>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유형예시(지방)	34
<표 3-6>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지원사업 선정 현황 ..	37
<표 3-7> 선진 시민의식 함양지원사업 선정 현황	41
<표 3-8>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지원사업 선정 현황 ..	42
<표 3-9>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지원사업 선정 현황 ..	43
<표 3-10>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지원사업 선정 현황 ..	44
<표 3-11>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선정 현황	47
<표 5-1> 조사 내용	78
<표 5-2> 응답자 특성	78
<표 5-3> 사업신청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80
<표 5-4>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단체(1)	81
<표 5-5>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단체(2)	82
<표 5-6> 사업선정 시, 가점/감점의 적정선	83
<표 5-7> 선정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	84
<표 5-8> 현행 자부담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85
<표 5-9> 적정 자부담 비율 증가 정도	85
<표 5-10> 적정 자부담 비율 감소 정도	86
<표 5-11> 국가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예산 포함 시, 가점의 적정선	87
<표 5-12> 사업선정 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88
<표 5-13> 유사사업 지원 시, 문제 해결방법	89

<표 5-14> 공익사업 추진 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 90

<표 5-15> 강사료 지급 기준 개선 방향 91

<표 5-16> 집행 및 관리단계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92

<표 5-17> 사업보고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93

<표 5-18> 보조금 집행 관련 가장 큰 문제점 94

<표 5-19> 정산단계의 제재규정 강화에 대한 의견 95

<표 5-20> 향후 개선해야 될 대안(중복응답)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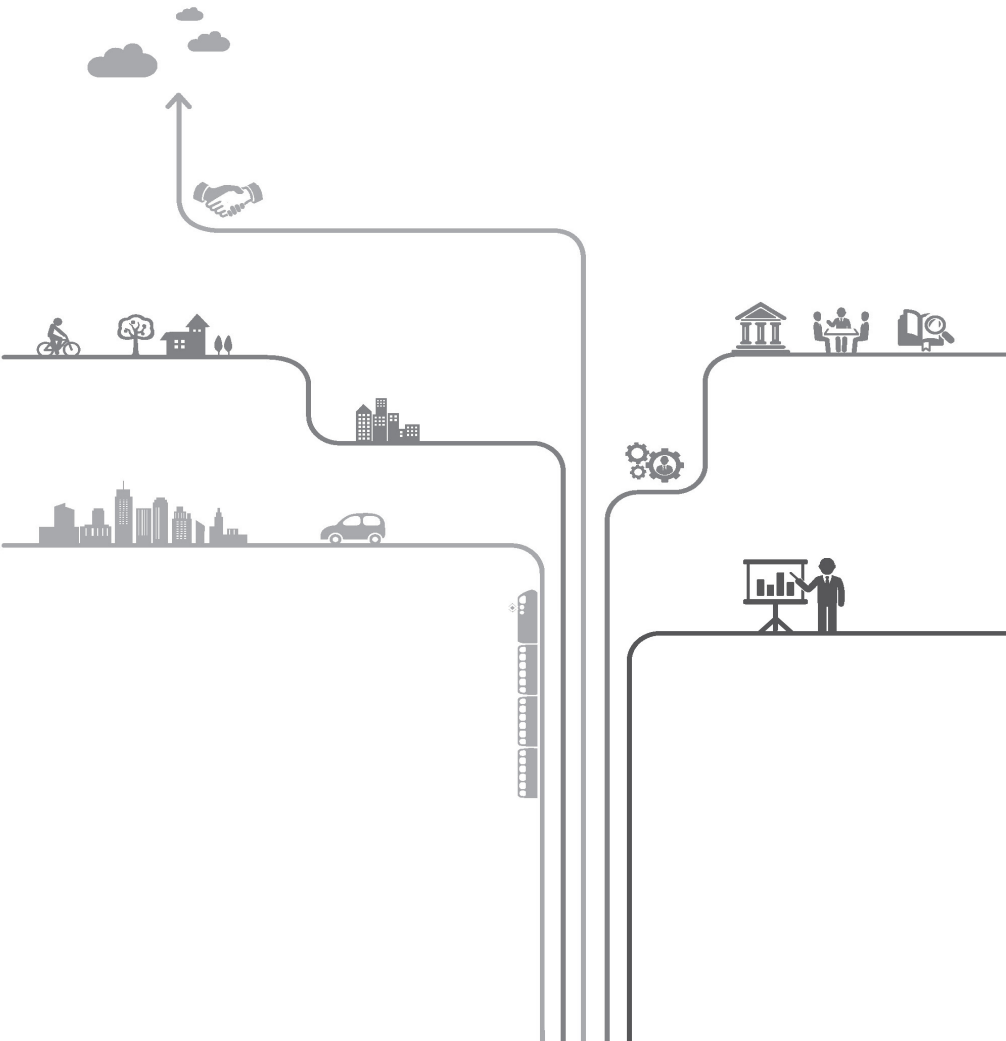


그림 차례

- <그림 5-1> 사업신청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79
- <그림 5-2>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단체 81
- <그림 5-3> 사업선정 시, 가점/감점의 적정선 82
- <그림 5-4> 선정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 83
- <그림 5-5> 현행 자부담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84
- <그림 5-6> 자부담 비율 증가/감소에 대한 의견 86
- <그림 5-7> 국가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예산 포함 시,
가점의 적정선 87
- <그림 5-8> 사업선정 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88
- <그림 5-9> 유사사업 지원 시, 문제 해결방법 89
- <그림 5-10> 공익사업 추진 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 90
- <그림 5-11> 강사료 지급 기준 개선 방향 91
- <그림 5-12> 집행 및 관리단계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92
- <그림 5-13> 사업보고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93
- <그림 5-14> 보조금 집행 관련 가장 큰 문제점 94
- <그림 5-15> 정산단계의 제재규정 강화에 대한 의견 ... 95
- <그림 5-16> 향후 개선해야 될 대안(중복응답) 9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비영리민간단체는 시민사회의 공익적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보충하기 위한 보편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되고,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임
- 21세기 이후,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사회가 복잡·다양화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한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취약분야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오늘날 한국의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정치와 문화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공익서비스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민주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예컨대,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업의 부정과 언론의 횡포 등을 감시하고, 우리사회의 긴급한 문제인 사회통합이나 환경문제 등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한편,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유한 특정영역에서의 전문성과 도덕성 및 투명성은 그들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재로 작용함
- 그러나 비영리, 비정부 조직이라는 특성은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도덕적 우위를 제공하지만 역설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함

- 즉, 재정적 취약성, 자발적 결사방식에 기인한 인력의 유동성으로 인한 전문성의 저하, 활동대상집단의 제한성 및 남설된 단체의 민주적 대표성의 부재와 같은 요인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공성과 공익적 활동의 수행에 한계로 작용하는 것임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정부는 1999년 이래,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한 바 있음
-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익적 시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NGO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발적 시민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 접근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정부와 자치단체의 과업이기도 하기 때문임
- 그러나 동 법은 공익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초보적인 수준의 기준과 체계만을 갖추고 있고 특히,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형태의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자율성의 저하나 재정독립성의 훼손, 지원대상이 된 단체의 선정과정과 지원수준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행과 법제의 존재, 전국적인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의 부재 등과 같은 제도적인 미비점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관계가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정책의 주창자 또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이 편중되는 등 그 동안의 정부지원이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제도를 악용하여 정부보조금 수령만을 위해 증빙서류를 조작하고, 보조금을 부정사용하게 하는 등의 비도덕적 행태를 초래하기도 하였음

- 이에 우리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인 NPAS를 도입하는 등 사업비의 회계관리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사업선정 및 심의 절차, 부당 집행시의 제재강화 등 관련대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2. 연구목적

-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의 관계는 상호간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한 채,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능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원칙과 함께 정부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현대 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사회문제는 시장의 힘과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공익적 시민활동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건전한 풀뿌리 민간단체의 역량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의 발전적 전망과 더불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정부 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제도적·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된 「2015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 효율적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령 및 이중지원을 방지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간단체의 업무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사업 부당집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관련 해외사례(관련법령 등) 파악
 - 행정자치부 ‘15년 비영리민간단체 집행지침의 적정성 검토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 사업유형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
- 사업유형별 단체 :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환경보전과 자

원절약을 위한 사업,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단체

사업추진 단계별로 설문조사를 통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익사업의 타당성 평가

○ 사업추진 단계 구분

- 사업신청단계
- 사업선정 및 승인단계
- 사업집행 및 관리단계
- 사업보고 단계
- 사업정산 단계

○ 조사대상 : 비영리 민간단체 실무자 중심 설문 조사

위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통계분석

○ 사업추진 단계별로 가장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단계 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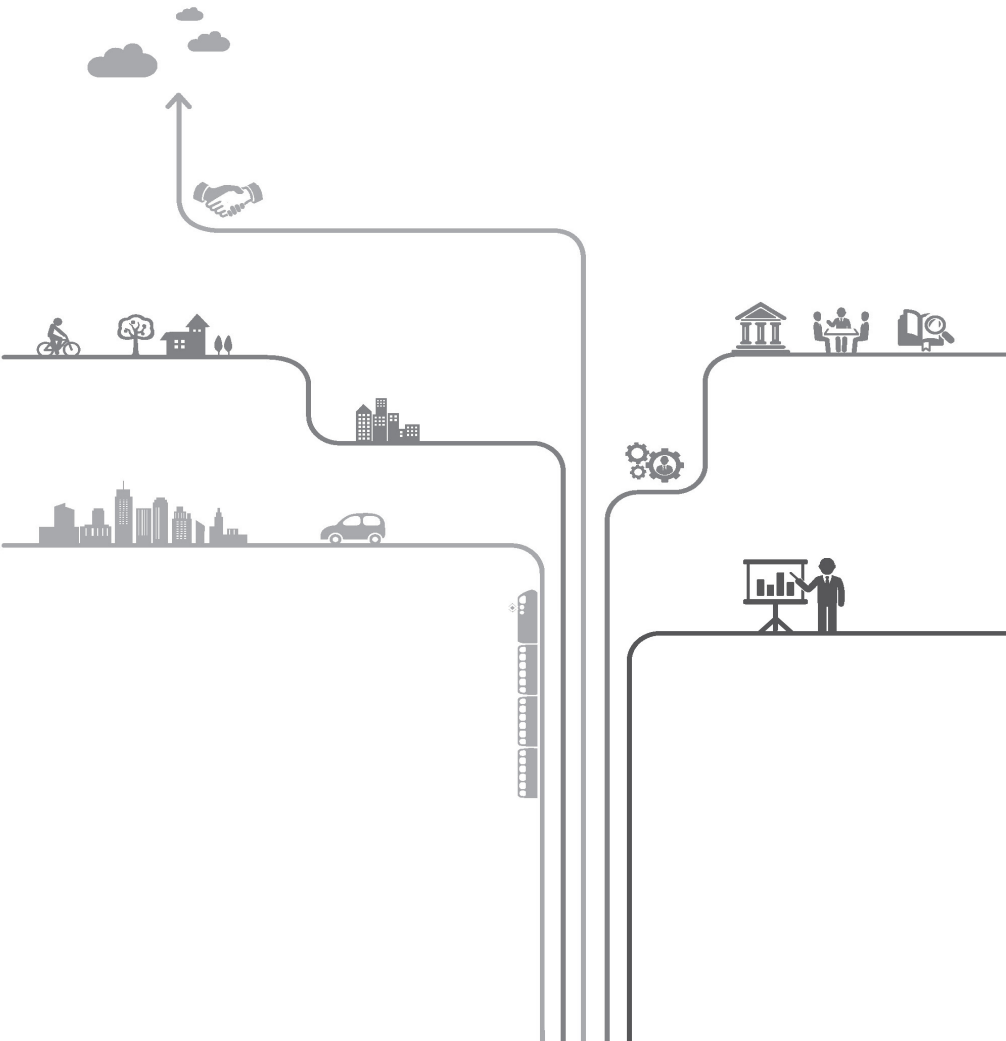
해외사례 조사

○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

제2장

비영리민간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
제2절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제2장

비영리민간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

1.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는 포괄하는 영역이 광범위하고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국가와 시장에 대해 취하는 관계와 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용어와 개념 역시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음(김동춘 외, 2004: 14)
- NGO의 효시로는, 자원봉사를 통한 구제활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봉사활동영역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Public Sector),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한 사적영역(Private Sector)에 이어 제3섹터(third Sector)로 지칭하고 있는 봉사영역(Voluntary Sector)이 초기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음
- 초기에 봉사영역 중심의 구제활동으로 출발한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후 각 나라에서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정치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Farrington and Bebbington, 1993:1~3)
- 비정부조직을 지칭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와 함께 비영리단체(NPO), 민간비영리단체(Private NPO), 비영리법인(Incorporated NPO),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운동단체(CMO: Civil Movement Organization), 관변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으며, 개념 정의도 매우 다의적임
 - 비영리단체(NPO) :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 및 민간조직으로서 배분금지계약은 받는 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모든 법인 및 비법인을 포함
 - 민간비영리단체(Private NPO): 비영리단체의 하위범주로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또한 재원이 조달되는 단체를 지칭

- 비영리법인(INPO: Incorporated NPO):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10조,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된 공식(허가) 비영리조직
 -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술, 자선 및 학문연구를 위한 재원조성(장학금 및 연구 프로젝트) 영역에서 활동하는 재단이나 연합회 또는 상속세법의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에 의해 설립된 공익추구 조직’
 -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공익추구활동에 참여하는 비정부조직으로, 이 범주에는 민주화단체 및 신념에 근거해 공익적 이슈를 다루는 조직 등을 포함한 advocacy 조직, 소비자단체, 환경운동단체, 권익보호 집단 등을 포함
 - 시민운동단체(CMO: Civil Movement Organization): 19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에 경제, 정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advocacy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 관변단체: 국가와 긴밀하고 매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에 대해 OECD는 이윤을 내는 조직들, 재단, 교육기관, 기타 종교집단들, 의료 및 상업협회들, 조합 및 문화단체들 및 자원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World Bank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혹은 대체적으로 독립적인 집단들과 제도들로서, 상업적 목적보다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이거나 조합적 목적을 갖는 단체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음(주성수, 1999: 45-46)
- 우리나라에서는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자원주의에 입각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수혜와 관계없이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박상필, 2000: 121), 또는 시

민사회 조직들 가운데 사회운동차원에서 활동하며, 자발성에 기초하여 조직되었으며,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결사체(신광영, 1999: 32) 등으로 정의됨

- 주로 비정부 또는 비국가 조직체로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적인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여야 함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함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함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함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함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함

○ 이러한 모든 개념을 종합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체성은 공식적 조직으로 사적 성격을 띠고, 비영리성, 자치성,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정부적, 비당파적 행위자여야 하고, 구성원간의 이익 무분배와 공익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실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박천일, 2011: 15)

2.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징

○ NGO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법인화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공조직화 되어 있어야 하고 1회성 집회로 끝나거나 비공식적 모임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함되지 않음
- 둘째, 비정부조직이어야 하며,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로부터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사회나 평의회 등에 정부 인사가 참여해서는 안되므로 정부기관의 일부로 존재하거나 공무원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민간의 독립기관이라 할 수 있음
- 셋째, 비영리조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 등에게 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됨
 - 사업활동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이익을 대표자들에게 분배해서는 안 되면 조직 본래의 활동 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 넷째, 자기관리, 자기통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조직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관리기구를 갖추고 있어서 외부세력이 조직관리에 관여하지 않음
- 다섯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활동해야 하는데 조직의 실제 활동을 조직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몇몇 발기인들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임
 -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만이 아니고 발기인들이 이사회를 조직하거나 재정적인 참여를 하는 것도 비영리민간단체에 포함됨
-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봉사하고 기여함

3.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

활동수준에 따른 분류

- 국제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NGO로 통칭되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단체분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환경, 평화, 난민구제, 저개발국 빈민지원 등 지구적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국제엠네스티’,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단체 등이 주요 사례임
- 전국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는 때때로 국제적 수준의 활동을 수행하기는 하나 활동의 대부분이 한 국가의 역내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단체를 말하고,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상당수의 단체들이 전국적 활동수준의 단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방자치, 지역 환경, 지역복지, 지역문화 등의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들 단체들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에 의해서는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임

조직구조에 따른 분류

- 단독형 단체는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대부분이 소규모 단체임
- 연합형 단체는 단체가 여러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단체로서 대규모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연합형의 성격을 가짐
- 협의형은 단독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등이 해당됨

법적요건에 따른 분류

- 법적요건에 따라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가진 법인체형 비

영리민간단체와 법인격이 아닌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임의형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함

- 활동영역에 따라서는 환경, 인권, 여성복지·소비자 권리·교육연구·청소년·의료보전·주택·개발·노동·국제원조·빈곤구제·교통·평화·문화예술체육·권력 감시 및 부정부패방지·모금, 경제정의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단체기능에 따른 분류
 - 견제기능 수행 단체는 주로 국가권력과 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단체로 조직이 오래되고 재정이 있는 가운데 정치변화에 영향이 적음
 - 복지기능 수행 단체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 청소년, 여성, 아동, 노인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임
 - 대변기능 수행 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장애인 단체, 에이즈 환자 단체 등임
 -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는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로, 시민강좌, 개방대학, 청소년 학교, 여성 아카데미, 토론광장, 환경캠프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운영원리를 가르침

- 이처럼 비영리민간단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는 준공공 및 민간조직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이윤동기에 의하지 않으면서 잉여소득의 배분금지 제약을 받으며 주로 시민의 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모든 법인 및 비법인이 포함됨

제2절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1.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방식

가. 직접적 지원 방식

- 직접적 지원방식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전체 예산 혹은 일부 예산을 정부의 예산지출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는 다시 재정 일반에 대한 지원과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사전적인 지원과 사후적인 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즉 사전적인 지원은 사업수행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임
-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뉨
- 첫째,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이 공개모집과 경쟁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임
- 둘째, 정부의 각 부처가 개별 규정에 의거하여 일부 공공업무에 대해 단독 혹은 몇 개의 비영리민간단체 중의 한 개의 단체와 협상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임
- 셋째,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일정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 정부가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과거 ‘에너지 시민연대’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협의회’가 해당됨
- 넷째,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이 특별 개별법률에 의거 특별한 단체에 배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임

- 위의 네 가지 유형과는 다른 형태로 정부가 직접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금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 기금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임
 - 기금형태는 정부 산하에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설립 당시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한 환경발전기금이 있었음
- 현재는 제도화되어 있거나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는 네 가지 지원 유형에서 특별지원은 폐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협상계약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반면, 공개경쟁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이들 지원유형은 지원의 목적달성 기준인 자율성 확보, 재정충족의 정도, 신뢰구축 효과 등의 기준에서 볼 때 다음의 표와 같은 장단점을 지님

<표 2-1> 정부지원의 유형에 대한 장단점

유형	자율성확보	재정충족정도	신뢰구축 효과
공개경쟁	선정 경쟁력 확보위해 정부가 원하는 서류작성 형식을 따라야 함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지속성이 약하며 사업비 외의 지출이 불가능함	자금사용의 실질적 심사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참여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음
협상계약	대체로 정부가 사업유형과 방식을 정하나 재정자립 정신을 크게 훼손하지 않음	지속성이 없지만 지원액이 많고 사업비 외 경상비 지출 가능	정부정책과정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단체의 역량증진에 도움
단체설립지원	정부간섭이 약하고 단체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재정자립 정신을 약화시킴	단체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지속적이며, 사업비외 사용 가능	자금의 투명도가 높고 정부와 협력방식이 발달하지만 시민사회의 비판이 강함
특별지원	정부간섭이 심하고 재정자립정신을 약화시킴	단체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지속성이 있으나 사업외 지출이 불가	정부에 종속되고 시민사회로부터 불신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p.19.

나. 간접적 지원 방식

- 간접지원방식은 시민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금면제 및 기부금 세제혜택,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의 할인, 무료 공익광고, 상근자 교육 지원, 사무실 무료대여 등이 있음
- 간접지원방식 중 조세감면과 우편요금의 지원은 이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우편요금은 일반우편에 대해서만 낮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조세감면 적용은 현재 혜택을 받는 데에는 미흡한 단계임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의 효과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정부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과 의지를 가진다는 양자 간의 쌍방향적인 협력과 견제의 상호작용임(박천일, 2011: 30)
-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나 성장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 간의 협력관계를 통한 정부 지원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음(Gazley & Brudney, 2007; Huxham, 1993; Kumar, Kant, & Amburgey, Taylor, 1997; 정광호, 2003)
- 경제적 효율성,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보다 많은 서비스의 제공, 조직학습, 새로운 기술의 습득, 위험의 분산, 공공책무성의 증진, 외부불확실성에 대한 완충력, 갈등의 회피와 같은 잠재적 편익도 있고, 거래비용의 증가, 기관의 자율성이나 공공책무성의 상실, 재정적 안정성의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함(Ferris, 1993; A. Gray, 2003; Grønbjerg, 1993; Saidel, 1991; Shaw, 2003, 박천일, 2011에서 재인용)

가. 긍정적 효과

- 비영리민간단체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보조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며 실제로 많은 부문 공공부문의 보조에 의지하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금 지급, 각종 세제감면, 특별우편요금 적용등과 같은 혜택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능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임(김동춘 외, 2004)
- 이 중에서도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기반을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단체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함(강상욱, 2001)
-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양자 간에 대화를 촉진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기도 함(Forman, 2001)
- 다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원부문의 실패, 정부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한계 및 비효율성 등과 같은 정부실패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관련 이론은 다음과 같음
- 정부실패 및 공공재 이론
 -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영리부문은 정부의 서비스 공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정부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위해 비영리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음(Piciotto, 1995; Kaul, 2006)
 -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부는 비영리단체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정치과정에 수렴하거나 흡수를 위한 정부의 이해의 전략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 정부의 공공부문의 성장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임(강상욱, 2001)
- 자발적 부문의 실패이론(Voluntary Failure Theory)
 -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필수적인 사회적 책임감은 자발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 또는 집단수준에서 더 잘 발휘되나 자발적 부문의 실패로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협력적 관계가 요구된다는 것임

- 정부는 사회적 강제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NGO에 제공할 수 있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슈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을 통제할 수 있어 정부와 NGO간의 협조는 공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이근주, 2000: 294-295)
- 공익성 이론(Salamon, 1987; Weisbrod, 1988)
 - 이러한 관점은 주로 제3자적 정부(Third-Party Government)와 복지국가 이론에서 주장
 - 이들 단체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복지의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인지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 공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의 행동반경이 국제화되는 환경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행동은 지역사회나 주권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가 자신의 일을 대신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나. 부정적 효과

- 정부의 재정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에 대한 자원의존적 경향으로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거나(Lipsky and Smith, 1993) 정부지원 확보를 위한 단체 간 경쟁으로 관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움(Ferris and Graddy, 1989: 128)
- 이러한 요인들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Borris and Steuerle, 1999),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개입이 있을 경우, 단체의 자율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단체의 문제해결능력들 중 이슈의 제기와 비판능력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임(Edwards & Hulme, 2002; Koch, Westeneng, & Ruben, 2007)

-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때는 정부의 기준에 맞는 활동을 지원하고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준에 적합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임
- 조직관리와 관련해서는 운영과 관련된 절차와 방식이 정부에 의한 감시 및 평가에 적합한 형태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리의 유연성, 비공식성 및 자원봉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자금, 회계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내부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임
- 비영리민간단체의 문제해결능력에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할수록 자체 재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됨(정광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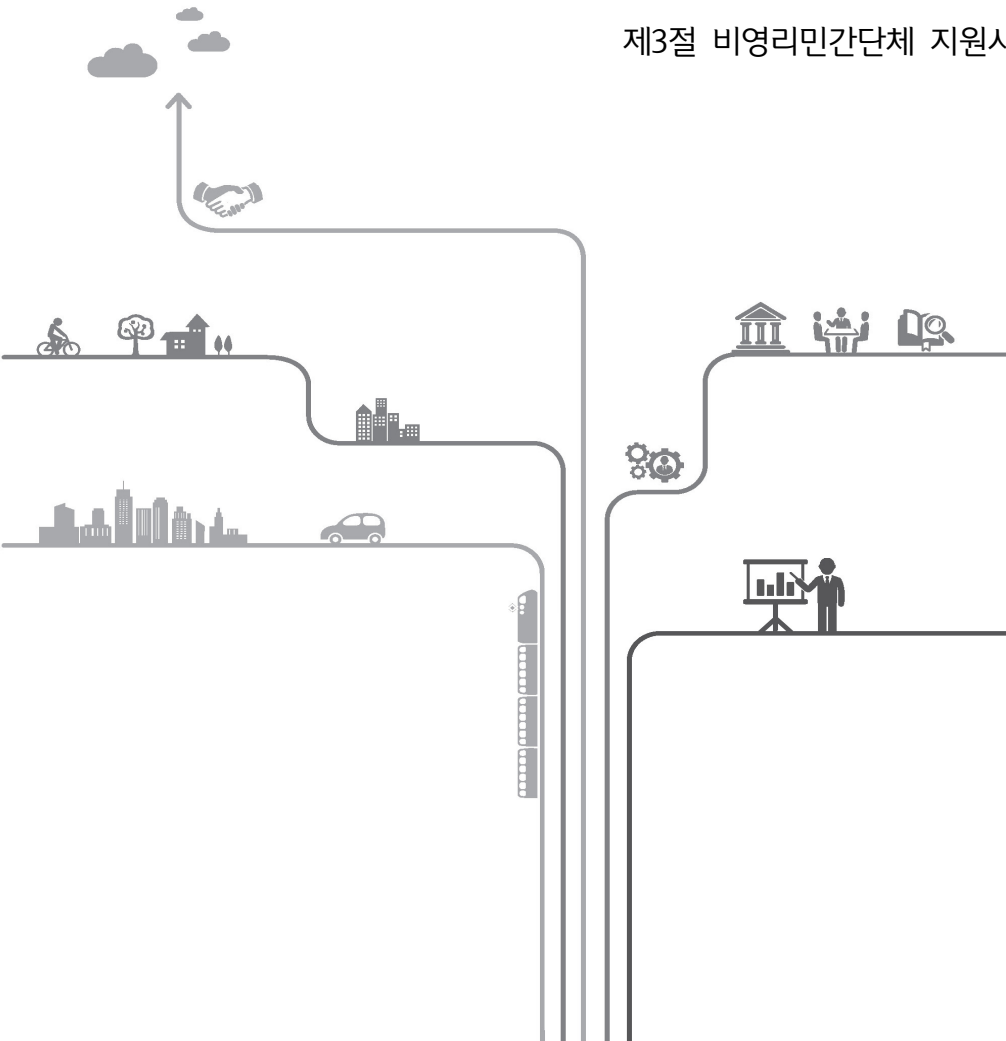
제3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현황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방법 및 형식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

제3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



제3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현황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방법 및 형식

1. 지원배경

-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지원법’)은 비정부단체의 범위와 등록요건을 명시하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0년도 제정된 법률임
-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지원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입법 추진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안」에서 절충되어 발전된 것임
 - 양 법안 내용 중 지원재단설립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하여 시민단체, 정부, 국회의원 등 각계에서 많은 의견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1999년 10월 양 법안을 근간으로 학계 및 시민운동계 등과의 공청회와 자문회의는 물론 주요 시민단체 실무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갖는 등 많은 협의과정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됨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지원법 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임(동법 제3조)
- 정부의 지원은 국고보조금을 공익사업비에 지원하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으로 조세감면과 우편요금 감액 그리고 행정지원(후원, 명칭, 승인 등)을 들 수 있음

2. 현행법상 지원방법 및 형식

가. 보조금의 교부

법적 근거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지원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면서(법 제5조 제2항),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함(법 제5조 제1항)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이란 가급적 독자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법 제6조)
 - 사업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 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함(법 시행령 제2조)
 -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임(시행령 제2조)

지원사업의 선정방식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함(법 제7조 제1항)

- 공익사업의 유형(시행령 제5조)
 -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 선정된 사업유형 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게 되며,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함(법 제7조 제2항)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회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함(동법 제7조 제3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역임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시행령 제6조)
-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함(시행령 제8조)

- 지원사업 선정은 사업내용, 단체역량, 예산내용, 이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선정기준에 의해 심사하며 심사는 서류 심사, 인터뷰,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함(행정자치부, 2015: 11)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8조)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시행령 제10조)
- 다만,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함(법 제12조)
- 이처럼 우리 정부는 지원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분야를 지정한다는 점, 정부의 재정지원의 집행과 정산 및 평가절차에 통일된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을 보이고 있음

나. 조세감면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법 제10조)
- 그러나 현재 이 조항에 의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의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될 때 뿐이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직접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 소득금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한다는 것임
 - 기부자가 법인일 때는 소득의 5%, 개인일 때는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하게 하거나 소득공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영리 민

간단체에 대한 기부를 권장한다는 취지임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제한 것이 되므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임
 - 모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해 준다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음(행정자치부, 2004: 26)

다. 우편요금의 지원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법 제11조)
-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하고, 우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 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함(시행령 제14조)

라. 행정지원 및 협조요청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13조)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기존 법인이거나 임의단체가 공익활동을 해오는데 지원법 제2조가 규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에 대해서 등록을 허가하고 있음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함(법 제4조)
-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3조)
 - 회칙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단체 공익활동 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지원대상 민간단체의 급조를 방지하며 법인에 준하는 공적요건을 구비하여 조세

감면 기타 간접지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하는 주무부처에서 법인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전제로 주무부처에 등록토록 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자유설립주의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적으로 3만개 정도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단체는 2015년 6월 30일 기준 12,630여개로 중앙행정기관에 1,531개, 지방자치단체에 11,099개임

<표 3-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단위 : 개)

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12,630	1,531	11,099

자료: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내부자료(2015)

<표 3-2> 중앙행정기관 등록현황

(단위 : 개)

계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1,531	11	51	4	12	2	7	4	7	18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43	181	151	10	33	203	161	37	9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통계청	경찰청
	180	175	46	101	11	28	1	1	9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가인권위원회		-	-
	7	6	16	3	2	1		-	-

자료: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내부자료(2015)

<표 3-3> 시·도 등록현황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
11,099	1,813	703	386	637	547	488	333	20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0	297	402	375	898	528	702	672	318

자료: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내부자료(2015)

- 이처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과 그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4>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유형예시(중앙)

기관명	단체명칭	사업내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현안개선사업
국가보훈처	6.18자유상이자회	국가안보 및 조국의 평화통일계몽
국세청	(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무료 세무상담, 기초생활질서 확립, 어려운 이웃돕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시민단체 정보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공정거래위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 정보제공, 소비자교육, 조사 연구
금융위원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발전및제도개선,상장회사기업내용공시및IR에 관한 사업
기획재정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연구, 시민조직, 시민교육, 시민고발센터운영 및 보호구조 등
문화재청	문화유산답사회 우리얼	문화유산 답사, 연구및관련학술행사 등
통일부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통일분야 민간남북대화추진사업, 민간주도세력육성등
법무부	한국소년보호협회	청소년 비행예방 및 비행소년 사회복귀 지원사업
국방부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 인 권운동

기관명	단체명칭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바른언어생활실천연합	바른언어생활의 실천으로 건강한 시민사회건설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 통합감독위)	한국단도박가족모임	도박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회합, 상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교육사업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절약 사회를 구현하기위해 시민의 자발적 에너지절약운동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보건복지부	상록회	무의탁 노인자매 결연, 무료시설 지원, 경로효친사상 등
환경부	무지개세상	생태계 연구, 영상기록, 환경오염실태조사 및 언론 홍보 등
고용노동부	한국여성능력개발원	여성취업알선, 교육사업 등
여성가족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입법부본래의기능과역할을활성화하는연구, 조사사업 -여성정치인력 향상 등
국토교통부	한국해비타트	무주택 영세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건축활동
통계청	한국통계학회	통계연구, 통계의 이론개발 및 보급, 학술활동
경찰청	한국교통시민협회	뽕소니 추방운동 및 사회봉사활동
소방방재청	한국생활안전연합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의 안전권리 증진 및 안전복지위한 사업 등
농촌진흥청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과학영농선도, 농가소득증대, 농민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산림청	전국산림보호협회	산림환경보전
중소기업청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기업 창업지원 및 정보 제공사업 등 경영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기타 부대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불법마약류감시 및 마약류 등 중독행위 의존증극복 -온·오프라인 엔 카운터 공동지도학습-재발·재범방지특수복지시설교육프로그램

기관명	단체명칭	사업내용
		적용 -마약류의존증 극복 지도 등 마약 퇴치활동
해양경찰청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수상레저안전관련지도자양성
교육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어머니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 사업 -여성복지사업 -정보화사업등
행정자치부	순국선열유족회	순국선열 및 민족정기 선양
특허청	한국특허학회	특허학연구 학술지 발간, 발명가 자격 특강 및 시험실기, 연구 발표회 및 강연 강습회 개최, 업적의 표창, 전국 학생 발명대회 개최 및 포상
외교부	한국청년회의소(JCI Korea)	지도역량개발, 지역사회개발, 국제와의 우호증진
해양수산부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해양수중 및 수변청소, 정화 등
미래창조과학부	과우회	-과학기술부 및 기타관련기관에 대하여과학기술정책의 자문 및 건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후생복지증진 및 상부상조에 관한사업 -과우회보발간사업

자료: 행정자치부(2014) (중앙) 민간단체등록현황

<표 3-5>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유형예시(지방)

기관명	단체명칭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	-국민보건및복지사업 -언어학교, 연구소설립 등 교육사업 -남북교류, 난민지원문화교류 등 활동문화사업 -생활유리, 출판사업, 소수민족, 생산기술 등 연구문화사업 -선교단체조직, 종교지도자 양성 등 종교문화사업 -관광개발, 해양개발, 산업개발 등 개발경제사업
부산광역시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환경문제 조사연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레인보우공연단	-다양한 나라의 전통춤, 노래, 연극공연 콘텐츠 개발 및 활동가 양성 -다양한 나라의 전통춤, 노래, 연극공연

기관명	단체명칭	사업내용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체험교육 -자원봉사활동 및 기타법인 목적달성에 필 요한 사업
인천광역시	우리농촌살리기 운동천주교인천교구본부	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조직구축대안농 법, 생명농법제시 및 보급
광주광역시	해병대전우회 광주광역시연합회	-어려운 이웃 돕기 자선사업 봉사활동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추방 -교통질서계도 및 환경정화 활동
대전광역시	되살미사랑나눔봉사대	재가장애인(휠체어)차량 이동 봉사
울산광역시	(사)한국국제봉사기구	자원봉사활동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YWCA	회원운동, 기독교운동, 사회운동, 어린이청 소년운동, 소비자환경운동
경기도	대한전통신앙보존회	아동,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속 예절교육 사업 등
강원도	강릉생명의 숲 국민운동	학교숲운동, 체험환경교육, 숲탐방, 숲체험 안내자 양성교육
충청북도	0.1희망나눔회	자원봉사 및 기부, 자선관련(정책개발,교 육사업, 홍보사업),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사회복지관련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해 당되는 사업 등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부여군협의 회	-바른예절·친절운동 -이웃사랑실천운동
전라북도	전주여성의 전화	여성의 인권과 복지증진, 위기의 여성상담
전라남도	새마을운동 나주시지회	생활의식개혁, 새마을국민교육, 민간사회 안전망 운동
경상북도	안동시수난구조대	-수난구조대원 교육지원활동 -수상사고발생 시 인명구조지원활동 -레저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수난구조네트워크를 통한 봉사활동 -수자원보호를 위한 수중정화 봉사활동 -수상레저사업 및 기타수난과 관련된 봉사 활동 등
경상남도	새마을운동진해시지회	민간사회안전망 운동, 환경보전운동, 생활 의식 개혁운동 등
제주도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 역량강화,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실현 지원 사업 등

자료: 행정자치부(2014) (도)민간단체등록현황 및 (시)민간단체등록현황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유형

-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계층 간 갈등해소, 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 자원봉사 확산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실천 등이 해당됨

-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자살예방, 도덕성 함양, 타협과 양보, 타인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 부정부패 감시, 교통질서 등 기초 법질서 지키기, 허례허식 배격,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 등이 해당됨

-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신기술·글로벌 창업 지원, 맞춤형 고용 증대, 전통문화 계승·발전, 융·복합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한류 확산, 생활체육 등 건전 스포츠·여가활동 활성화 등의 내용임

-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 친환경 실천 캠페인,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자원재생 캠페인,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의 활동임

-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 국토보전 및 나라사랑 활동,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국제평화 증진 활동, 안전사고 예방, 4대악(학교·성·가정폭력 및 유해식품) 근절 활동, 재해·재난 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등임

□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지구촌 새마을운동 등 해외 저개발지역 지원, 국제적 기아·빈곤 퇴치 의료 지원, 구호 활동, 국제적 문화·체육·여성·청소년 교류 등 선린친선 활동, 지구온난화, 세계평화 정착 등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 활동 등임

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현황

- 2015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총 513개 단체가 490개의 사업을 접수하였고, 이 가운데 236개 단체의 22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음
-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59개 사업(59개 단체)에 대해 2,204백만원이, 선진 시민의식 함양 사업에 대해서는 30개 단체의 28개 사업에 대해 1,133백만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음
-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8개 단체의 8개 사업에 대해 301백만원,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사업에 대해서는 24개 단체의 24개 사업에 대해 905백만원이 지원 결정되었음
-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사업에 대해서는 68개 단체의 59개 사업에 대해 2,569백만원,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47개 단체의 45개 사업에 대해 1,888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가.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표 3-6>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지원사업 선정 현황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사단법인 사랑나눔연대	“찾아가는 사랑나눔, 월스톱 이동 서비스”	60,000	
안구기증운동협회	사후안구기증 서약서 접수	30,000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사단법인 사랑의 바이올린	어린이 대상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무료 제공과 무료 레슨 등	30,000	
사단법인 통일미래연대	자랑찬 대한민국 바로알기 근현대사 역사문화 탐방	42,000	
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	2015 이웃사랑대행진	40,00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feel 살리기 한마당!	40,000	
한국화장실협회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기부·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사랑의화장실 지어주기』	30,000	
재단법인 스마일	장애인 치과의료 복지 서비스 지원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30,000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을 위한 소통과 공감	68,000	
(사)대한노인회	나눔과 베품으로 동화(同化)되는 복지공동체	38,000	
(사)새롭고하나된 조국을위한모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34,000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행정자치부 지원 웰다잉교육 '아름다운 마침표, 그 마지막 성장과 하나 됨'	30,000	
공익희생자지원센터	소외된 영웅과 함께하는 국민공감 프로젝트 '국민안전지킴이!' 공익희생자와 다시 만나다!	30,000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15, 시민이 세상을 만든다! -민주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생활정치-	42,000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및 애국심고취를 위한 다문화(북한이탈주민)자녀, 저소득층자녀 독도탐방 및 독도사진전시회	30,000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북한이탈청소년, 남북한사회통합 리더로 육성하기	30,000	
(사)소비자시민모임	꽃장년 주부소비자의 재능개발을 통한 사회나눔활동 프로젝트	30,000	
(사)이미지 컨설팅트협회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행복 이미지 구축	30,000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가족의 몸살림, 마음살림, 가족살림	34,000	
사단법인 무지개세상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가슴으로 만나는 숲	43,000	
사)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	2015 대한민국 장애인 정보화 축제 -전국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	56,000	
미담장학회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50,000	
(사)탈북자동지회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공감활동과 김장김치전달	30,000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한국글로벌피츠재단	사회통합과 문화소통을 위한 '한국거주 중국 동포역사교육/문화스토리여행'	46,000	
사단법인 한국BBS중앙연맹	우리누리 생태캠프	30,000	
사단법인 피난처	환영하는사회, 기여하는 난민(Welcoming Society, Contributing Refugees)	30,000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계층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의식개혁 선양을 위한 교육·홍보·실천·캠페인 전국민서명운동 전개	30,000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남북 청소년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남북수다>	30,000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저신장장애인들의 자조 적문화캠프 및 ALPK 건강증진 프로젝트	40,000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커뮤니티매핑 '알아?! 휠체어가갈수있는곳!'	30,000	
한국하모니카교육협회	하모니카 연주를 통한 세대통합	30,000	
한국간이식인협회	장기기증 활성화 홍보를 위한 "나눔공간" 책자발행	30,000	
함께하는아버지들	아버지와 아름다운 동행(同幸)	30,000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소아·청소년 당뇨병 아이들과 함께하는 Dreaming 멘토링	30,000	
차세대문화인연대	다문화 통일 캠프 및 미디어 리더러시 교육	30,000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다문화 결혼이민자 수공예 강사 양성	30,000	
마노아마노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음악여행	30,000	
(사)무지개봉사단	창조를 위한 문화형성	30,000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	2015년도 한일평화적민간교류 공익사업	34,000	
재단법인,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다문화 및 탈북자녀 한국어 교육과정	40,000	다년도(3년)
남북동행	소통·화합을 위한 '남북대학생들의 동행 UNI Culture'	30,000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소외된 이웃이 없는 지역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활동조직사업	48,000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시민의 모임	사회통합과 계층갈등 해소를 통한 '대한민국 氣 살리기'프로젝트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이다'	30,000	
북한인권시민연합	소통(작은통일)을 위하여 소통하는 자리	35,000	
부모마음봉사단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사업	52,000	
한국차매예방운동본부	인지건강 놀이문화 프로젝트 '경로당이 들썩 들썩'	30,000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사회적 효행문화' 실천 캠페인과 인성교육 실시를 통한 재능기부 나눔문화 확산	30,000	
가족아카데미아	이혼·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새로운 도전: 다름 나눔공동체	43,000	
아낌없이 주는 숲	아낌없이 주는 녹색생태체험학교	42,000	
행복나눔플러스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안전 지키기 사업	73,000	
사단법인 사회정의센터	다름과 닮음의 공동체 네트워크 '꿈꾸는 무지개'	30,00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문화활동을 통한 장애인역량강화 및 조직화 지원사업	30,000	
사단법인 대한민국의식협회	다문화가정 생활 한국음식 교육	30,000	
(사)환경과사람들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활동을 통한 사회 통합(장애인, 청소년, 소외계층 등)	46,000	
사)해냄복지회	중증장애인 인턴 역량강화 프로젝트(중증장애인 인턴 SAT(Skill, Attitude, Task) 강화)	30,000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표현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연생태활동 Project	48,000	
필로소하모니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세상으로 향하는 희망의 날개 짓'	56,000	
세이울	한국 위인의 리더십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 국민과 하나 되는 대한민국 만들기	34,000	
사단법인큐즈 과학코리아	2015.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직업탐구 진로 체험 긍정적 방향제시)	60,000	다년도 (3년)

자료: 행정자치부(2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내역

나. 선진 시민의식 함양

〈표 3-7〉 선진 시민의식 함양지원사업 선정 현황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사)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도덕성 함양 활동 '배려하는 나, 존중받는 너'	50,000	
바른넷글실천연대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위한 인성교육과 법질서 확립	32,000	
(사)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청년대학생 미래지도자 양성	36,000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랑과 관심으로 歡한 세상 만들기	30,000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민자 사회통합 법질서 의식 함양 및 건강사회 기반조성	35,000	
대한민국지킴이 불교도총연합	나라사랑 한마음 운동	32,000	
지구시민운동연합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부모자녀교육, 지구시민 글로벌 리더 양성프로젝트	30,000	
불법광고를 근절하는 시민의 모임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옥외광고물 개선 홍보사업	40,000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찾아가는교육-위킴담대상 인터넷윤리	30,000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본부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을 통한 갈등해소 및 선진 민주시민의식 함양	40,000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자.	42,000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30,000	
(사)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	건전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글로벌 선플누리단 활동지원사업	38,000	
창의행정민관소통위원회	민관소통활성화를 위한 '민간주도 정책제안 토론회'	50,000	
행정개혁시민연합	행정현장학교	30,000	
효나라운동중앙회	어머니 효지도사 양성고 초·중·고 학생 도덕성함양 인성교육 사업	50,000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	학교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사진. UCC. 웹툰 공모	32,000	
사단법인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시민의식 향상 프로젝트(시민역량개발 교육 및 교재개발)	30,000	
환경문화시민연대	선진시민의식 변화운동- 세대간 소통과 도덕성 회복	30,000	
(사)국학원	광복에서 통일까지 나라사랑 국민의식 함양사업	40,000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문화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기초질서부터 지키자”	38,000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찾아가는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30,000	
생명문화	"생명2019" 실현을 위한 생명사랑행복드림 지원 사업	32,000	
사단법인 평화운동연합	Great Korean, Great Korea	30,000	
사단법인 시대정신	선거문화 선진화를 위한 사업	30,000	
국민통합시민운동	헌법과 함께 하나되는 대한민국	180,000	3개 단체 컨소시엄
(사)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존중의식함양 찾아가는 성기치교육 생생교실	30,000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탈북민 교육	36,000	

자료: 행정자치부(2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내역

다.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표 3-8>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지원사업 선정 현황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은퇴자 재능의 특허등록과 3D프린팅 사업전략 지원 프로그램	30,000	다년도 (2년)
신시대21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한 분야별 구술자료 수집 및 홍보 - 수송산업, 스포츠 분야	42,000	
(사)아나기코리아비엔비	관광객숙박문제해소를 위한 '제1회 대한민국 홈스테이축제'와 이와 관련 된 사업	40,000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회	대한민국 건국 70년사	40,000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대통령상 제25회 전국청소년화랑대회	50,000	
한국소비자파워센터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30,000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피해다발분야 피해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제안	33,000	
원코리아	광복70주년 미국 해외공연 및 한류확산 페스티벌	36,000	

자료: 행정자치부(2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내역

라.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표 3-9>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지원사업 선정 현황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사)한국수중환경협회	강·하천, 바다 수중 정화활동 및 수중 환경보전 캠페인	36,000	
사단법인 주암호보전협의회	생명의 물, 하천 살리는 환경지킴이!	30,000	
대한민국해양특수구조단	해양환경보전 및 대민 계몽활동	36,000	
사단법인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	녹색생활과 에너지절약 교육 및 캠페인	36,000	
사단법인 자전거21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	30,000	
녹색한국환경운동본부	부산신항 인근 지역의 해육상 환경오염 감시 및 정화 운동	45,000	
사)환경사랑나눔회	유 캔 기브 캠페인	38,000	
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	푸른숲 산림보호 녹색환경 캠페인	46,000	
(사)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인명구조, 수중수색교육 및 상수원 수중정화사업	30,000	
(사)한국국립공원진흥회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위한 국토사랑 운동	48,000	
(사)한국자전거문화포럼	쪽빛 자전거, 전국 '살림길을 달린다'(자전거'살림길'운동)	30,000	
(사)한국구조연합회	수중생태계 개선을 위한 한강수중정화 활동	38,000	
(사)한국자원순환 재활용연합회	Green A(ttitude) A(ction) 확산사업: 환경을 위한 자세와 행동 키워기	40,000	
한국자연공원협회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 탐방 교육	40,000	
사단법인 한국그린피아연맹	글로벌그린코리아운동	40,000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국토종주자전거길 전국모니터링	40,000	
(사)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자전거 안전 교실	36,000	
한국청소년환경단	2015 청소년 녹색환경캠페인 및 부모-자녀 사랑캠프	50,000	
(사)한국유스호스텔연맹	2015 자전거 국토대장정	30,000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녹색운동연맹중앙회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자원절약 실천사업	30,000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내 손으로 만들어 달려보는 우리동네 자전거 길 “손으로 구르는 자전거 페달”	38,000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해, 바다는 안전한가?	38,000	
(사)그린크로스 코리아	제5회 전국 초등학교생 녹색생활가이드 및 녹색생활실천 일기쓰기대회	40,000	
사)한국잠수협회	청소년 해양생태 보전 및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 만들기 캠페인	40,000	

자료: 행정자치부(2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내역

마.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표 3-10>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지원사업 선정 현황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사단법인 디엠지미래연합	제6회 DMZ 미래길 걷기대회	30,000	
(재)한국통일진흥원	평화통일 및 국가안보 대국민 의식 함양사업	30,000	
사단법인 충효안보연합	자유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안보 공감대 확산	30,000	
사단법인 물망초	제2회 2015 대학생 동부전선 DMZ 통일발걸음	50,000	2개 단체 컨소시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New 학교안전 종합프로젝트 '학교안전 다함께'	50,000	
사단법인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제고와 민족의식 함양, 국위선양 증진	40,000	
한국스카우트연맹	통일을 꿈꾸는 청소년 희망 발걸음(청소년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1호)	45,000	
(사)한미우호협회	한미우호증진 및 홍보활동	30,000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6.25를 바로 알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52,000	
애국단체총협의회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활동	35,000	
(사)국민행동본부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증진	40,000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현충원참배 및 안보취약현장 방문, 충효예 정신과 애국심 고취	35,000	
선진화시민행동	통일안보 바로알기 힘내라 대한민국!!	30,000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전불감증 해소와 4대악 근절을 위한 안전의식의 확산 및 제도활동	50,000	
사단법인 나라사랑포병연합	청소년 호국 및 안보, 보훈의식과 인성계도	40,000	
(사)우리역사바로알기	나라사랑 현장체험학습 및 강의 프로그램	35,000	
인권KOREA	찾아가는 안보콘서트	40,000	
재단법인 행복세상	2015년 국가위기관리 정책토론회	45,000	
사단법인 안전문화홍보시민모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	45,000	
사단법인 선한사마리아 인운동본부	응급환자를 위한 민간 구급대원 양성	30,000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폭력예방교육	35,000	
(사)통일문화연구원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32,000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감동과 재미가 만나는 대학생 안보체험 프로그램	40,00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평화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여성관련 의제개발 및 여성역할 강화 『여성과의 동행(同行), 평화통일로의 직행(直行)』	30,000	
(사)자연사랑	3.1운동에서 통일까지~ 통일희망 남*북한 나무심기 운동	40,000	
북한민주화 청년학생포럼	광복과 분단 70년, 새희망의 통일시대 준비, 2015년 나라사랑, 통일을 위한 국민 의식증진사업	240,000	3개 단체 컨소시엄
GPYCKOREA	청년 통일 서포터즈 "우리는 통일세대"	100,000	2개 단체 컨소시엄 다년도 (3년)
서희외교포럼	통일, 외교, 안보 문제의 대국민 소통	30,000	
(사)대한무궁화중앙회	무궁화 홍보 교육장 조성공사 (완성사업)	30,000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안전은 지키고! 사고는 줄이고! 생활속 안전약속 다집전국안전사고예방캠페인	30,000	
사단법인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국제캠페인 - 북한의 통치자금 조달에 이용되는 'Modern Slavery'를 고발한다	30,00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청소년 수난재난 예방 기본인명구조 교육 지원	30,000	
블루유니온	찾아가는 나라사랑 서비스 '안보콜'	35,000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40,000	
(사)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평화통일기반구축과 국제평화증진을 위한 70개국 평화의 자전거 통일대장정	30,000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청소년 백일장 및 국가관 함양교육	30,000	
전국자전거길잇기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희망나눔	50,000	2개 단체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국민연합	DMZ 자전거대행진		컨소시엄
사단법인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새싹놀이마당 프로젝트"	40,000	
(사)국방국악문화진흥회	나라사랑 콘서트 「 I ♥ KOREA 」	100,000	2개 단체 컨소시엄
나라사랑운동본부	범 국민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	30,000	
사회안전국민행복진흥원	재난안전 예방교육 및 정부4대악 근절 공익활동	30,000	
사단법인푸른한국	자유통일 실현을 위한 대국민 의식 고취	35,000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2015 우리아이 생활안전 OK! & 사랑의 보육기관 석약 캠페인	30,000	
(사)평화문제연구소	SNS를 활용한 청소년·대학생 '통일미래비전' 확산 프로그램	30,000	
자주국방네트워크	독도·이어도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력 바로 알기	30,000	
청년이여는미래	분단70년, 두 바퀴로 전하는 통일공감 [DMZ 자전거 캠프]	30,000	
사단법인 건국이념보급회	대한민국 건국사 재조명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100,000	2개 단체 컨소시엄
사)한민족미래연구소	민족통일기반구축 및 민간단체간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40,000	
포럼동서남북	범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왜곡된 역사관 재정비	35,000	
(사)NK지식인연대	“월례북한실상설명회”를 통한 국가안보증진	30,000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45,000	
사단법인 문화예술교육협회	학교폭력예방문화예술로 '형동생만들기'	40,000	
사단법인 남북언론연구회	광복 70주년, 통일시대 개막을 위한 국민대축제	90,000	3개 단체 컨소시엄
발자국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놀이 세트 제작 및 공연	30,00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3 ('우리와 함께 톡톡!!')	40,000	
(사)세이브엔케이	초,중,고,대학생 통일미래 UCC 공모전	30,000	
교통문화운동본부	고속도로휴게소 기반 국민안전요령 홍보 및 교육사업	30,000	
사단법인 월드피스자유연합	6.25전쟁의 조명과 교육을 통한 전 국민의 국가안보의식 고취	35,000	
녹색성장환경교육진흥회	대한민국 청소년 통일공감 체험사관학교	35,000	

자료: 행정자치부(2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내역

바. 국제교류협력

<표 3-11>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선정 현황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2015 홀트 대학생 봉사단 파견	40,000	
(사)한국소방구조 스포츠연맹	소방구조스포츠를 통한 선진 소방문화 습득과 국제교류협력	40,000	
캄보디아학교 세우기모임	캄보디아 낙후지역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	35,000	다년도 (3년)
한국청소년연맹	글로벌청년봉사단	50,000	
(재)중앙노동경제 연구원	국제적 새마을운동 확산과 선진화된 기업문화 공유 포럼	36,000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고려인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사랑의 메신저)	40,000	
(사)국제전략교류협회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동북아 국제 안보교류협력 활동	30,000	
사단법인 평화삼천	라오스 '새마을 교육공동체' 프로젝트 - 산간지역 교육환경 및 인식계몽사업	30,000	
사단법인 아드라코리아	국내 다문화가정의 해외봉사활동 및 한 국알리기사업	35,000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케냐 HIV/AIDS 감염여성 정체성 재정립 사업	60,000	
(사)국제옥수수재단	근면·자조·협동하는 캄보디아	30,000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한국-몽골 의료보건 교류협력 및 몽골지 역 기초보건 증진 지원사업	40,000	
사단법인MGU	2015년 하계 해외 의료봉사	30,000	
텐포원	부룬디 가툼바지역 자연양돈 교육 및 돼 지은행 사업	30,000	다년도 (3년)
(사)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	중고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50,000	
사)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	15개국 입양청소년 및 2세 정체성회복을 위한 한국배움학교와 국내 청소년과 함 께 하는 국제교류	50,000	
(사)한국국제봉사기구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비쇼프투스 아동 복지 지원 및 전문가 학술 교류	50,000	다년도 (3년)
(재)국제농업개발원	필리핀 아라우 새마을 농업학교의 안정 적 운영을 위한 초기 지원	30,000	
사단법인 비전케어	아시아·아프리카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 진 사업	45,000	
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아시아지역 차세대 지도자 포럼	30,000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사)푸른지구	사막화와 황사 방지를 위한 식목 및 대안농업을 통한 주민자립사업	80,000	2개 단체 컨소시엄 다년도 (3년)
(사)글로벌투게더	스와질란드 호호(Hhohho)지역 보건의료 통합개선사업	50,000	다년도 (3년)
사단법인 나마스페코리아	2015 네팔 담푸스 희망심기	50,000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일수교50주년기념> Across the Deomcracy 한일 청년교류 거리극 순회 공연	50,000	
삼동인터내셔널	네팔 농촌마을 새마을정신 전수를 통한 빈곤퇴치 및 자립능력 배양사업	40,000	
사단법인 새빛	스리랑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식 안마교육과 오디오북 및 점자달력 배포 사업	30,000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기반으로 한 '한국-네팔' 공동의료개발사업	42,000	
(사)아시아교류협회	2015 한중일 청년 해외봉사단	30,000	
국경없는교육사회	컴퓨터교실 운영을 통한 세네갈 학생의 수학과 과학기술 학습역량강화	30,000	
(사)태평양아시아협회	PYEX (PAS Youth Exchange Program)-PAS청년 해외봉사단 문화교류	40,000	
가나안농군운동 세계본부	라오스 비엔티엔주 농촌 살리기 새마을 사업	50,000	
자유교육연합	2015 KOREA 청년드림 챌린지 프로젝트	60,000	
선한영향력	Good Share For The Future	40,000	
메이크아프리카베터	가나북부 시어버터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35,000	
사단법인 나눔인터내셔널	지구촌에 봉사하는 한국인! 한국을 배우는 세계인! 2탄^	60,000	
(사)메디피스	필리핀 일로일로주 모자보건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60,000	다년도 (3년)
사단법인 위드어스	세계로 한국 입양아들을 찾아가서 한국 알리기	50,000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35,000	
사단법인 등대복지회	말라위 낙후농촌 유아 학습환경개선 및 전문 교원양성 지원	30,000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유네스코 세계시민학교	30,000	
프렌드아시아	광복 70주년 기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마을로 떠나는 힐링 봉사단	30,000	
사단법인 샘복지재단	중국 요녕성 취약계층 조선족을 위한 민족문화교육 및 의료지원 사업	40,000	
국제연꽃마을	베트남 쑹남성 어린이집 운영	35,000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사)퍼스빌리지네트워크	아시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사업	80,000	2개 단체 컨소시엄 다년도 (3년)
(사)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오케스트라 활동 지원사업	30,000	

자료: 행정자치부(2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내역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절차

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함
- 사업신청서의 방문 또는 우편, 택배, 이메일 등에 의한 제출 등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가 불가능하며, 사업신청은 반드시 NPAS에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기간 중에 정해진 서식과 절차에 따라 NPAS를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NPAS는 2014년부터 도입된「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으로 사업 추진상황 안내, 공익사업 신청서 작성·제출, 보조금 교부 신청·접수, 보조금 집행 관리, 중간·최종평가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등 지원사업 전반을 관리함
 - NPAS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할 뿐 아니라 수기 관리하던 업무의 정보화·표준화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지원 및 의사소통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시스템임
- 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중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민간단체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신청하는 사업의 예산편성은 관계법령과 정부가 제시한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예산편성 원칙」 및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별 예산은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개별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나 단체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수행할 수 있음
- 또한 단기간 성과창출이 어려운 사업의 사업기간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연차 사업계획(최대 3년)에 의하여 추진해야 할 다년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계속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비율 미 충족 시에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됨

나. 신청사업 심사 및 선정

- 사업의 심사 및 선정은 별도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진행됨
 - 지원사업 선정은 사업내용, 단체역량, 예산내용, 이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선정 기준(심사표)에 의해 심사하며 심사는 서류심사, 인터뷰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됨
 -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와 신청사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은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심사점수,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심사표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하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 사업선정 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다음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자치부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확인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그 산하조직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전년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수행성과가 부실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반납한 단체,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별 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하고,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되는데, 예를 들어, 2014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는 가점을, 미흡단체는 감점처리 함
 - 평가결과가 우수(90점 이상)인 사업(단체)은 최대 5점까지 가점, 평가결과가 미흡(60점 미만)인 사업(단체)은 10점 일괄 감점
-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예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총점에 1~3점 가점 부여(가점비율: 10~15% 미만 1점, 15~20% 미만 2점, 20% 이상 3점)하며, 전년도 사업자 선정시 자부담 가점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단체는 당해연도 사업평가와 익년도 사업 선정 시 가점의 2배를 감점 조치함

- 자부담의 최소 5%는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5% 이상 출자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자부담 출자할 수 있으며, 이때에 출자하는 물품의 가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물품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물품 관련 영수증, 기부명세서 등)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자부담 출자 비용으로 인정함
- 2015년 지원사업 유형 수요조사에 응답한 단체는 심사시 총점의 1점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다.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지원대상 사업 선정결과 확인 후, NPAS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 사항을 준비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게 됨
- 사업실행계획서는 결정된 보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사업신청 내용(단위사업 및 세부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사업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단체명의로 사업비 관리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발급받아 관련내용을 NPAS에 등록함
- 교부신청 전에 반드시 자부담 금액을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출자의 경우 교부 신청시 관련내용을 NPAS에 등록(신청)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자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교부신청시 대표단체 및 참여단체 전체가 동의하는 “컨소시엄 협약서”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문서 첨부하고,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년도 사업의 경우 교부신청 해당연도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교부신청서(실행계획서 작성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성격,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성과지표 작성시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성과평가 항목(사업참여자 수, 참여자의 만족도, 수행시 사회적 기여도, 욕구 충족도, 파급효과 등)을 3가지 이내로 선정해야 하며, 평가항목의 선정 사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 및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고 최종평가 제출시 제시한 성과지표의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라. 보조금 교부신청 검토, 사업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민간단체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각종 제출 서류 확인 후 사업을 승인하게 됨
 - 교부신청 내용,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행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에 불응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교부는 자부담 사업비가 통장에 입금된 후에 교부하게 되며, 보조금 분할교부 사업은 실행계획서의 자부담을 보조금 분할 금액 비율(1차 70%, 2차 30%)만큼 입금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함
- 행정자치부는 1차 보조금 지급 전후로 사업집행지침 안내 교육을 실시하며, 민간단체는 사업추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실무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단체는 사업 추진기간 중에 평가기관 주관의 “역량강화 워크숍 2회(예정)” 및 “교육프로그램(연간 약 20시간)”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 금지 등 사업수행과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에 선정된 후 내부사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포기를 신청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함

마. 사업집행 및 관리

- 보조금을 수령한 민간단체는 관련법률을 숙지,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련 서류와 전자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집행내역을 NPAS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사업 내용과 예산 배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변경 집행된 사업비는 부적정 집행으로 평가되어 반납하여야 함
- 자부담 사업비도 전체 사업비의 일부이며 자부담 예산을 전제로 국고보조금지금이 결정되었으므로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2,000만원 이상 인쇄비, 물품구입, 홍보비 집행시 의무적으로 조달청 등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시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시 환수함
- 사업비 집행 관련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기타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민간단체에서 보관하여야 함

바. 중간·최종평가서 제출 및 평가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사업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용역기관은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최종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함
- 행정자치부와 평가기관은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 계획을 사전에 민간단체

에 통보하여야 하며, 민간단체는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민간단체는 지원사업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보고서를 NPAS를 통해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 평가 제출시 실행계획서 작성시 제출한 성과지표의 평가 항목에 대한 실적 및 달성률을 기재하고 측정방법 및 실적 산출근거,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평가는 NPAS 집행 등록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사업비 집행 후 관련내용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사업 평가 시 미집행으로 평가되어 반납하여야 함
- 중간평가 결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 등록 내역이 기준에 미달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자치부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정상 추진사업의 경우 자부담 잔액 입금 확인 후 2차 보조금 교부미흡사업의 경우 문제점 시정·보완 및 자부담 잔액 입금 확인 후 2차 보조금 교부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중단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집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적정 집행금액으로 평가하고 해당 금액은 반납 조치할 수 있음
 -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된 경우
 - 지원사업의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경우
 - 증빙서류 및 첨부자료를 통해 집행내역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부당집행으로 평가된 내용에 대하여 평가기관은 해당 민간단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 재평가 받을 수 있음

- 최종 평가결과 부적정 집행내역으로 평가된 집행금액은 정산을 통해 반납하여야 함
- 최종평가 제출시 자부담 집행 비율이 보조금 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분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사. 사업비 정산

- 최종 평가를 통해 정리된 정산내역(집행잔액, 이자 및 수수료, 부당집행 환수액)을 민간단체에 통보하면 민간단체는 이를 반납해야 하고, 사업비 정산 시 의무적 자부담(보조금의 5%)을 집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무적 자부담액과 실제 집행(‘적정’ 평가)한 자부담의 차액은 반납하여야 함
- 민간단체에서 정산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계약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민간단체는 이후 관련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문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 기간 내 회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제3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은 매년 1월말 경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지원사업을 공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함
- 공고이후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1개월 동안 심사 후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됨
-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는 전체 지원금의 일부가 5월중 교부되고 이후 사업이 집행됨
- 이후 8월과 9월중에 단체와 주무부서의 일정을 감안하여 실지평가를 포함한 중간평가가 행해지면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나머지의 2차보조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됨
- 이후 단체는 다음해 1월 최종적인 사업보고서와 함께 만족도평가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2월중 이루어지면 1회의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사업기간은 해당 회계연도 1월에서 12월이나, 심사 및 선정은 3-4월에나 이루어지고, 보조금 교부는 5월, 사업결과보고서는 익년 1월 중에 제출, 2월 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익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실제 사업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실정임
- 이러한 촉박한 일정은 담당 주무부서의 사업 준비 및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짧은 사업기간으로는 장기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고경훈, 2006)

2. 사업선정 및 승인단계

- 신청은 사업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사업은 전국 사업과 지역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되는데, 시나 도 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행정서비스나 특정 계층에게만 필요한 공공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적 보충성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
- 신청단계에서 지역사업에 신청하고 전국사업에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중복신청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박천일, 2011: 87)
- 한편, 사업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심의 및 선정하는데 1개월의 짧은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사업선정에 한계가 존재함
-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매년 사업유형을 선정하고 공무한 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심사를 하는데 신청단체는 많은데 비하여 심사위원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밀한 심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박천일, 2011: 88)
- 또한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투명성에 관해 지적할 수 있는데, 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심의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조금 배분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선정의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단체의 영향력이나 인지도, 서류작성 능력 등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될 확률을 높게 되고, 이러한 서류작성은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과 형식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정부의 기준에 맞추고 훈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Wolch, 1990)

- 따라서 새로 설립된 단체, 작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서류작성능력 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줄 게 됨(박상필, 2000)

3. 사업집행 및 관리단계

- 언급한대로, 사업비는 2차에 걸쳐서 교부되는데, 1차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지원결정액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추진 중간평가결과 에 따라 잔여보조금 30%를 지급함
-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야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집행이 경직되어 이를 정부평가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제약이 발생함
-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보조금은 민간단체의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사업집행을 위한 보조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중앙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당 선정액이 평균 4000만원 정도이나, 지방사업의 경우 몇 백만원 수준의 지원 에 그쳐 사업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일회성 행사로 사업을 끝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비영리부문의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비영리부문의 자 유와 자발성에 대한 제약과 규제가 지나치게 많은 반면, 인프라 구축 등 간 접적 지원에 대한 정책은 거의 부재함을 지적할 수 있음

4. 사업보고 단계

- 중간평가와 관련한 문제점은 중간평가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는 점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들과 함께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중간 점검이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3명 정도이고 대개 기타 민간협력 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함께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의 마찬가지로 사업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점검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박천일, 2011)
-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최종평가 및 사후(종합)평가와 관련하여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사업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서면보고서 검토 → 면접평가 → 최종평가결과 도출 등의 순서로 진행하거나 면접평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서 평가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행사 중심의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내용의 충실성이나 성과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보조금의 적법한 사용과 같은 회계평가에 초점을 두기도 함
- 1월에 최종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월에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에 이르기까지 1개월이라는 평가기간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 시비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5. 사업정산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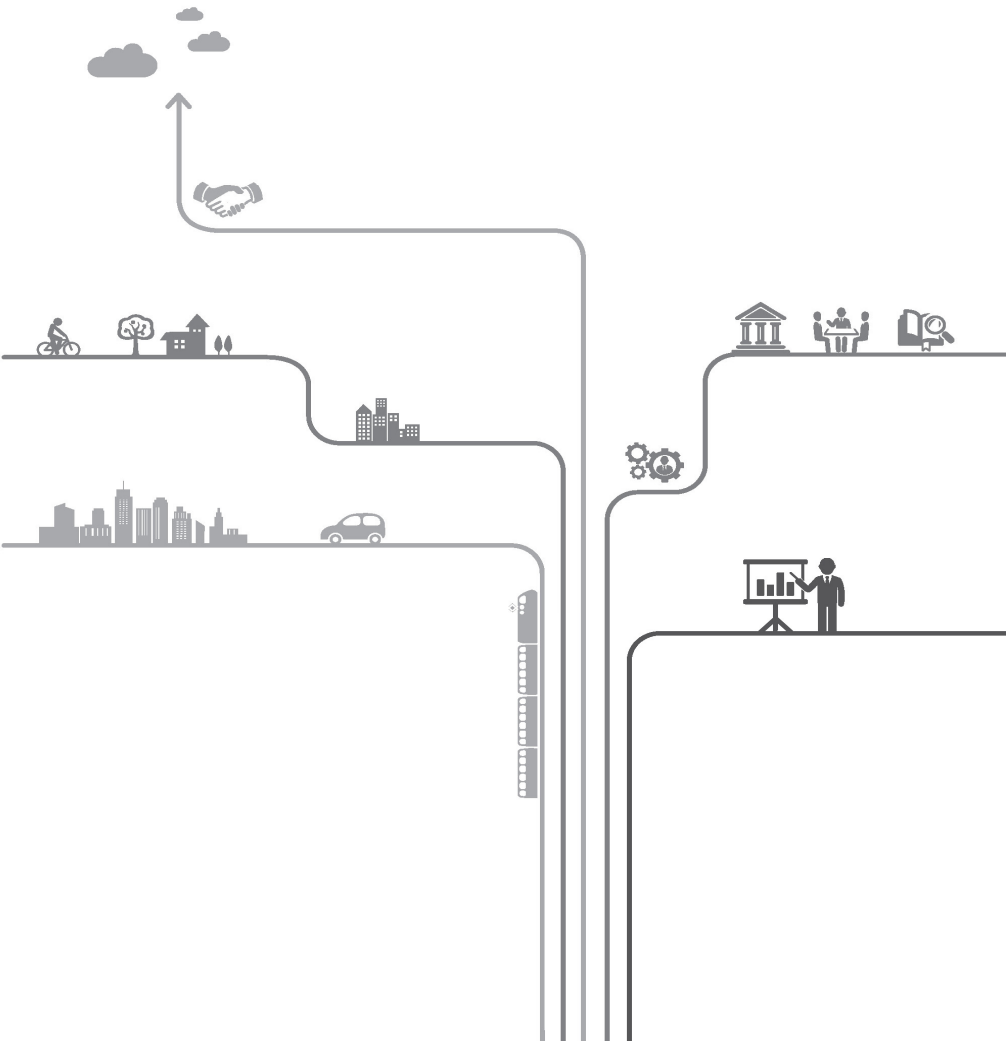
- 사업정산은 사업 종료 후, 회계평가를 통하여 보조금 사용에 있어 부정한 사용이 발견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고 재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진사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방법은 차년도 사업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평가결과는 차년도의 사업선정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차년도 사업의 감점 형태보다는 일정기간 사업신청자격을 유보한다던지 다른 적절한 제재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제4장

해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제4장

해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례

제1절 미국

1. 단체의 설립 및 등록

- 미국의 경우는 비영리단체(NPO)가 가장 명료하게 규정되고 비영리 고유영역이 매우 발달된 나라로, 일반적으로 미국의 비영리단체는 ‘비배당의 원칙’, 즉,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단체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목적인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약속한 민간법인으로 정의됨(김수현, 2000)
- 미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은 사회 서비스, 건강, 교육과 연구, 예술, 종교, 변호 활동 등 전 범위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정부와 시장의 대체물 또는 정부와 시장의 갭을 메우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에서 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Kramer, 1981: 57) 형태가 중심임
- 따라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간의 특징은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을 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대부분임(Salmon, 1995: 84-86)
-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등록에 대해서 비영리 조직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관할하는 법에 의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즉, 비영리조직의 법인화는 주 정부법에 의하고 세제혜택에 대한 사항은 연방법에 의해 관장되고 있음
 - 즉, 주정부로부터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연방정부로부터 세 감면의 지위를 획득하는 두가지 절차로 구성되는 것임
- 연방법은 없고 대부분의 주에서 「비영리법인법(Nonprofit Corporation Law)」에 따라 국무성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의 국무성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는 비영리조직의 목적, 사업의 주요 사무실 소재, 임직원,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정관과 규정을 포함하여야 함(박천일, 2011: 39)

2. 지도 감독

- 미국의 경우 철저히 민-관의 ‘동반자’(Partnership) 관계 속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해당 프로젝트의 ‘계약’이행여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짐
- 사업수행결과를 성과를 검토하고 계약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타 단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짐(박천일, 2011: 41)

3. 정부의 지원방식

가. 직접지원

-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를 대상으로 특정목적의 연방예산을 지원하는데, 주 정부는 이를 시정부에, 시정부는 또 관내 민간단체들로부터 프로젝트계획서를 공개입찰하고 자금을 할당함
- 시정부를 거치지 않고 주 정부나 연방정부가 직접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사업을 입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회계연도 초에 연방, 주, 시정부의 각과의 연간 예산지원 일정, 지침을 알리는 고시, 「RFP」(Request for Proposal)가 있음
 - RFP는 정부기관, 대학들에 보내지며,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이 RFP를 보고 각 과의 지원일정, 방침을 파악한 뒤 그 내용에 맞춰 프로젝트를 설계, 자금을 신청함
- 경제개발단체의 경우에는 시정부의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자금일정을 보고 계획서를 작성, 자금을 신청함(임승빈, 2009)

- 다만, 신청단체는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면세지위를 확보하여야 함
- 미국 정부는 이같이 민간에 대한 자금 지원을 그것이 단체지원이든 개인 지원이든 프로젝트에 따라 수행하며(박천일, 2011)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개인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프로젝트에 따라 단체를 선정함
- 개별 민간단체들의 입장에서도 아무 곳이든 필요한 프로그램에 연방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자들을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임승빈, 2009: 190)

나. 간접지원

- 미국은 단체의 소득세 감면은 연방법에 의해 연방정부로부터 그 혜택이 주어지는데, 연방세법에서 세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30여종)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시행하는 조직시험(OrganizationTest)을 통과해야 함
-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소득세의 면세지위는 주소소득세의 면세지위와 연결되고, 기부자들에게도 세감면 혜택이 부여됨
- 미국은 주별로 모금법(Solicitation Act) 및 자선신탁법(Charitable Trust Act) 등에 따라 국무성에 등록·허가를 받아 연중모금이 가능하고, 기부금에 대한 횡령,탈세 등을 막기 위해 모금 및 예산사용에 대해 주 검찰과 국세청에 보고(연 1회)를 의무화하고 있음
- 우편요금 지원제도 역시 25%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

제2절 영국

1. 단체의 설립 및 등록

- 민간비영리활동 부문을 총칭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영역(Voluntary sector)”과 자선단체(Charity)라는 용어인데, 국가독립기관인 “자선위원회”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은 단체 전반을 지칭하여 “자선(charity)”이라는 단어가 비영리활동의 주요 용어로 정착되고 있음
-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법은 없고, 자선단체 형태로서는 회사법(Company Act 1985)에 의한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법인격이 없는 신탁, 왕실에 의한 칙허장설립단체,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로 분류됨
-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에 의거 ‘자선위원회’에 등록 신청하는 인가주의를 택하고 있고 영속적 기탁재산을 가졌거나 토지를 사용·점유하고 있는 공익단체와 총수입이 연간 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공익단체는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음
- 자선단체의 등록을 관장하는 기관은 독립적인 정부기관인 자선위원회(Charity Committee)로서 자선위원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체의 Charity에 대해 등록과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자선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선단체 중 정부의 외곽단체 등을 제외한 등록단체 전반을 가리켜 “일반자선단체(general charity)” 라고 하며, 자선단체는 반드시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도 무관함
- 그리고 모든 등록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자동적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지도 감독

- 영국은 채리티 기관에서 등록이 인정되면 세제상 우대를 받는 대신에 회계 보고 책임 등의 감독을 받고 해당 단체가 예산집행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 등록을 말소하며, 은행구좌 동결, 자금운용 금지, 단체 재산에 대한 업무수행금지 등을 조치함
-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ABFO(Accrediting Bureau for Fundraising Organizations)와 같은 평가기관이 따로 존재하여 평가가 행해짐(박천일, 2011: 44)

3. 정부의 지원

가. 직접지원

-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시장의 원리와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간접적 지원방법이 주를 이루며, 환경·노동·보건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특정서비스에 대하여 자원봉사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원함
- 주로 고용창출, 소외계층 지원, 주민복지 분야에 사용함

나. 간접지원

- 영국은 자선위원회에 등록되고 국세청으로부터 면세 자격을 승인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수익사업은 과세함
- 법인격의 유무와 세제우대조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선단체로 등록한 경우에만 세제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등록자선단체는 본래 면세이지만, 운용상 자선단체자격을 가진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세제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고, 지방세에 한하여 등록자선단체이외

의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도 면세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감면조치의 정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자선위원회에 등록 및 법인자격 취득 후 자선단체법에 따라 연중모금 활동이 가능함

제3절 일본

1. 단체의 설립 및 등록

- 일본은 NGO를 “비정부조직“으로 칭하고 있으며, 국제연맹이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정한 국제연맹헌장 제71조에 명문화되어 있음
- 등록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이 1998년 12월 시행되었고 불특정다수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비영리활동을 12개 영역으로 규정하였으며, 2002년 법률개정에 의해 5영역(12~217)을 추가하여 총17개 활동 영역이 규정되어 있음
- 법의 특징은 법률의 요건을 갖추면 관할청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認證)해주어야 하며, 행정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법률처럼 政令, 省令, 通達 등의 상세한 운용방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박천일, 2011: 46)
- 단체가 법인격을 부여받기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민병로, 2006)
 - 다음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해서 부당한 조건을 붙이지 말 것
 - 임원 중에서 보수를 받는 자의 수가 임원총수의 3분의1이하 일 것
 - 행하는 활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일 것

- 종교의 교의를 넓히고 의식행사를 하거나,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정치상의 주의를 추진하거나 지지하고,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특정공직의후보자내지는공직에있는자또는정당을추천·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 사원이 10인 이상 일 것
 - 폭력단, 또는 폭력단내지는 그 구성원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가 아닐 것
- 인정NPO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public support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실적판정기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요건임(김진수, 2009)
- 총수입금액에서 국가 등에서의 보조금, 위탁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경상수입금액이 차지하는 기부금 등 수입금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실적판정기간이란, 신청사업연도의 직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종료일 전 2년 이내에 종료한 사업연도 중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당해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직전 2사업연도를 합한 기간을 말하며, 판단기준은 수입기부금총액 등 ÷ 총 수입금액 등 $\geq 1/5$ 이 되어야 함
- 이외에도 사업활동 중 일정비율의 공익활동, 비영리적 활동, 운영조직 및 회계의 적정성, 사업활동 내용의 적절성, 정보공개, 법령위반, 부정행위, 공익에 반하는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설립 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적어도 2개의 사업연도를 마쳐야 하고 관할청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의혹이 없다는 요지의 증명서를 교부받았을 때 인정 NPO법인으로 성립될 수 있음(박천일, 2011: 49-50)
-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단체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설립의 인증을 받아야 함

2. 지도 감독

- 일본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률상 개인의 모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표자 등의 개인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과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등기가 불가능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됨
- 법인화되면 기부 등에 한해서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가능한 “認定NPO法人”이 되는 길이 열려 재정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法人県民税 균등 할액의 감면과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등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있고, 관할청의 감독도 적어짐
- 법인격의 취득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NPO 자신이 비교해서 자유의사로 결정하는 것이며, 초창기에는 임의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가 기반이 갖추어진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는 선택하기도 함
-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관할청에 매년 사업보고서, 재산 목록,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토록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보고징수, 입회검사, 개선명령, 설립인증 취소를 할 수 있음

3. 정부의 지원

가. 직접지원

- 일본은 개별법에 의해 각 부처에서 관련단체에 지원하고 있음
- 총무성은 공생사회 실현분야 지원하고 외무성은 경제·사회개발협력 사업 및 인도지원 사업분야에 지원하고, 문부성은 봉사·체험활동 사업 등을 지원함

나. 간접지원

- 일본은 NPO법에 따라 지원금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NPO법인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행한 경우에만 법인세가 과세되는「인격 없는 사단」과동

일한 취급을 하고 있는 등 법인세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국세청의 세제혜택 인증요건이 엄격해 총 2500여개의 법인 가운데 10개 가량의 법인만 혜택을 받고 있음

- 기부금 공제에 관한 규정은 법률 제정 때에는 없었지만, 2001년 법률개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인정NPO법인」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본은 별도의 모금법이 없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공동모금회」에서 개별단체와 공동으로 모금 후 모금액을 배분하며,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조치로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한 개인이 소득세 계산을 할 경우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며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조례에서 지정한 ‘인정 NPO 법인’에 개인이 기부한 경우 개인주민세(지방세)계산 시 기부금공제가 적용됨
- 법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한 법인이 법인세를 계산할 경우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더하여 별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정해져 있음
- 상속 또는 유증의 의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한 사람이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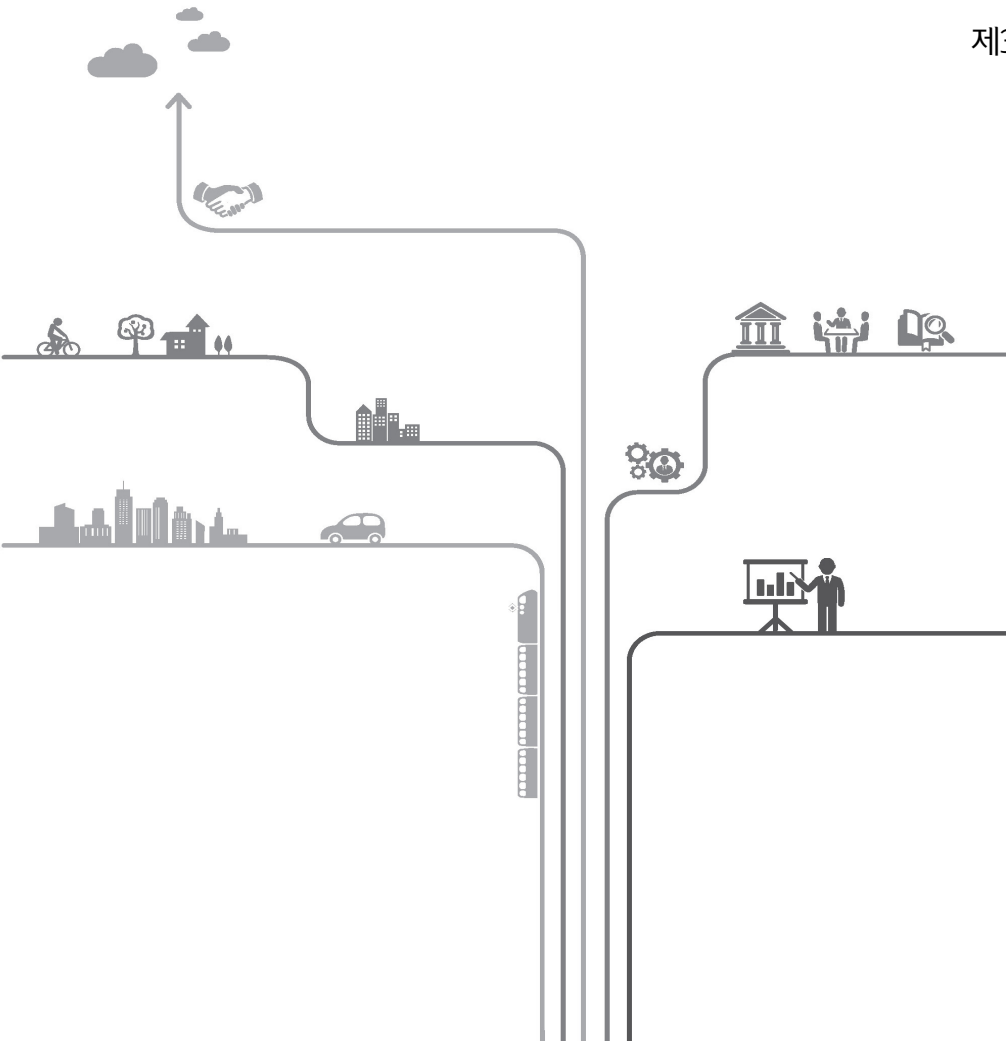
제5장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실태분석

제1절 설문조사 결과

제2절 응답자 현황

제3절 분석결과



제5장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실태분석

제1절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민간단체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시행한 공익 사업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 구성원
- 표본 수: 전체 300명
(이메일 조사 280명/홈페이지 방문 조사 20명)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이메일/홈페이지 방문)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통계처리
- 조사 시기: 2015년 12월

□ 조사 내용

- 본 조사는 ‘사업신청 단계’부터 ‘사업정산 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5-1> 조사 내용

단계	조사 내용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단계
사업선정 및 승인단계	- 사업선정 시, 가점/감점의 적정성 - 선정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 - 현행 자부담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 자부담 비율 증가/감소 정도에 대한 의견 - 국가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예산 포함 시, 가점의 적정성 - 사업 선정 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사업집행 및 관리단계	- 유사사업 지원 시, 문제해결방법 - 공익사업 추진 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 - 집행 및 관리단계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사업보고 단계	- 사업보고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사업정산 단계	- 보조금 집행 관련 가장 큰 문제점 - 정산단계의 제재규정 강화에 대한 의견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발전을 위한 개선해야할 대안

제2절 응답자 현황

응답자 특성

<표 5-2> 응답자 특성

		구성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300)	100.0
사업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38.0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18.3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11.0

<표 5-2> 응답자 특성(계속)

		구성비	
		사례 수(명)	비율(%)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11.3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10.7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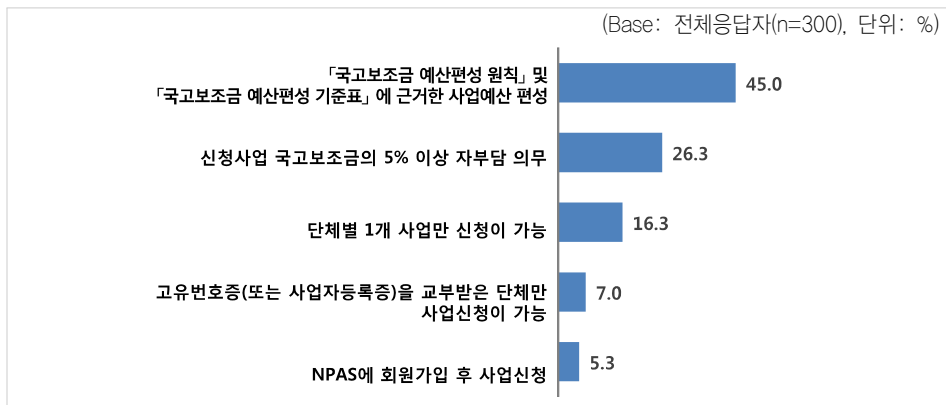
제3절 분석결과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 공익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단계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근거한 사업예산 편성이 4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 의무’(26.3%),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 사업신청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표 5-3> 사업신청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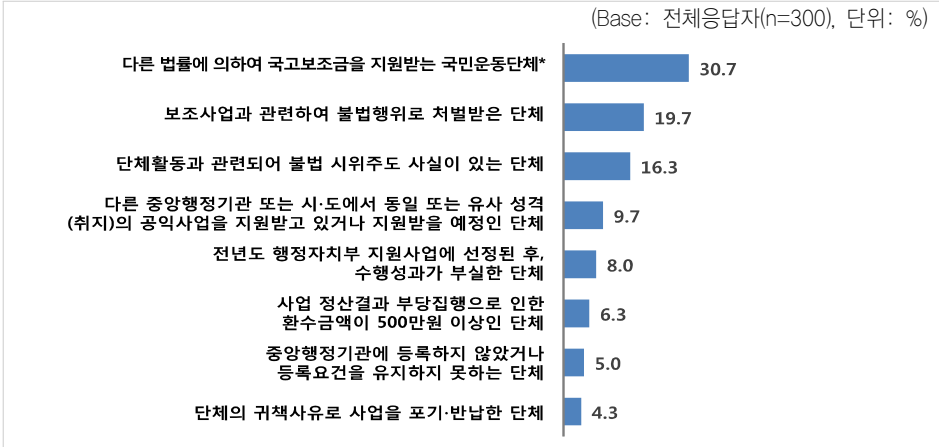
		사례수 (명)	국고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사업 예산 편성	신청사업 국고 보조금의 5%이상 자부담 의무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	고유 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사업 신청이 가능	NPAS에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전체		(300)	45.0	26.3	16.3	7.0	5.3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36.0	32.5	20.2	7.0	4.4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50.9	30.9	9.1	5.5	3.6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42.4	24.2	12.1	12.1	9.1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47.1	20.6	26.5	0.0	5.9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65.6	9.4	12.5	9.4	3.1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46.9	21.9	12.5	9.4	9.4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단체

- 공익사업 신청단계에서 제외되는 단체들 중 제도개선을 위해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가 3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단체’(19.7%), ‘단체활동과 관련되어 불법 시위 주도 사실이 있는 단체’(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단체



*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있음

<표 5-4>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단체(1)

(단위: %)

		사례수 (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단체	단체활동과 관련되어 불법시위주도 사실이 있는 단체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유사)한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는(예정) 단체
전체		(300)	30.7	19.7	16.3	9.7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33.3	18.4	16.7	9.6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27.3	14.5	16.4	12.7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36.4	15.2	12.1	12.1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26.5	32.4	11.8	8.8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31.3	21.9	21.9	6.3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25.0	21.9	18.8	6.3

(이어서)

<표 5-5>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단체(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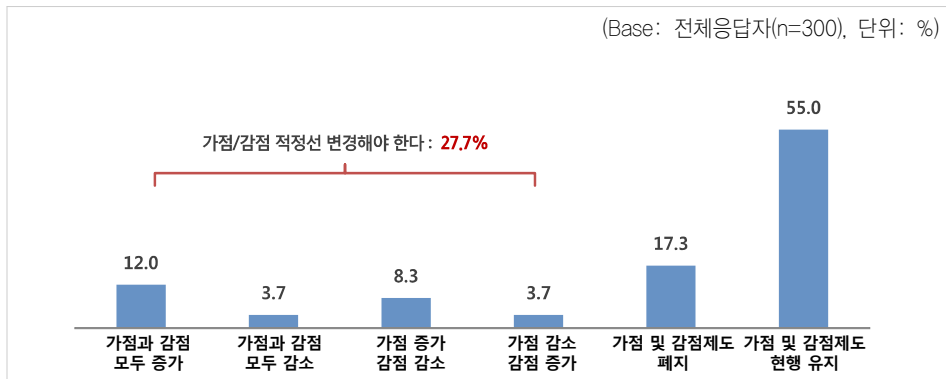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년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수행성과가 부실한 단체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 로 인한 환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단체	중앙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단체의 귀책사유 로 사업을 포기·반납 한단체
전체		(300)	8.0	6.3	5.0	4.3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3.5	7.9	4.4	6.1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12.7	7.3	3.6	5.5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15.2	3.0	3.0	3.0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5.9	5.9	2.9	5.9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3.1	3.1	12.5	0.0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15.6	6.3	6.3	0.0	

2. 사업선정 및 승인단계

사업선정 시, 가점/감점의 적정선

- 공익사업 신청단계에서의 가점과 감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가점 및 감점제도 현행 유지’가 55.0%로 가장 많았고, ‘가점 및 감점제도 폐지’는 17.3%로 나타남

<그림 5-3> 사업선정 시, 가점/감점의 적정선



<표 5-6> 사업선정 시, 가점/감점의 적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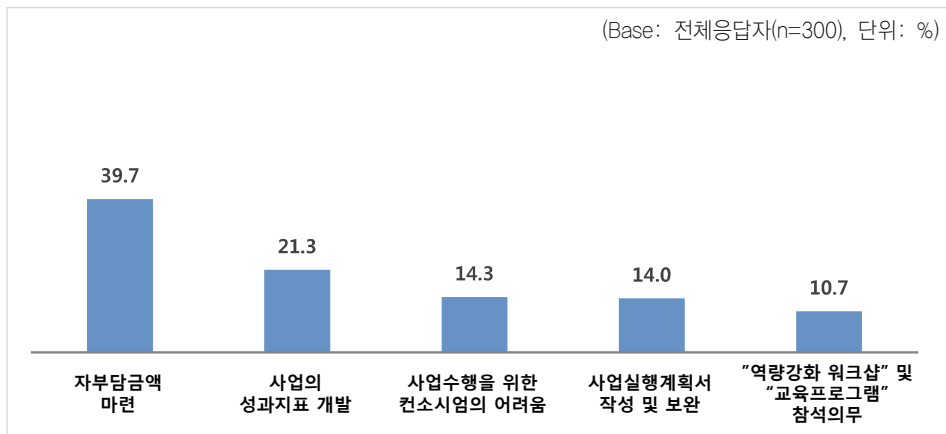
(단위: %)

		사례 수 (명)	가점과 감점 모두 증가	가점과 감점 모두 감소	가점 증가 감점 감소	가점 감소 감점 증가	가점 및 감점제도 폐지	가점 및 감점제도 현행 유지
전체		(300)	12.0	3.7	8.3	3.7	17.3	55.0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14.0	4.4	7.9	5.3	17.5	50.9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9.1	1.8	10.9	3.6	16.4	58.2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6.1	3.0	15.2	3.0	18.2	54.5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14.7	5.9	5.9	2.9	17.6	52.9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15.6	3.1	3.1	0.0	18.8	59.4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9.4	3.1	6.3	3.1	15.6	62.5

□ 선정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

- 공익사업 추진 시, 사업선정 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부담금액 마련’이 3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21.3%), ‘사업수행을 위한 컨소시엄의 어려움’(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4> 선정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



<표 5-7> 선정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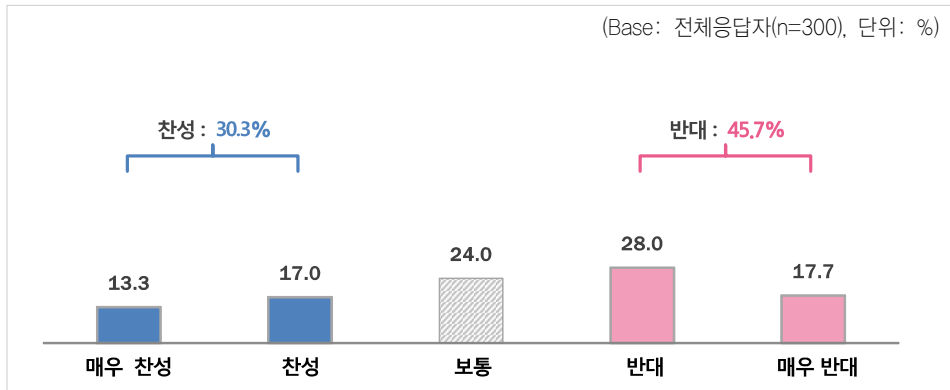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자부담 금액 마련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사업수행 을 위한 컨소시엄 의 어려움	사업 실행계획 서 작성 및 보완	”역량 강화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무
전체		(300)	39.7	21.3	14.3	14.0	10.7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42.1	21.9	16.7	12.3	7.0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34.5	25.5	14.5	10.9	14.5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39.4	21.2	21.2	12.1	6.1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55.9	14.7	8.8	5.9	14.7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34.4	18.8	6.3	31.3	9.4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28.1	21.9	12.5	18.8	18.8

□ **현행 자부담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 현행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5%)을 높여 정부의존도를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한다’는 30.3%(매우 찬성 13.3%+찬성 17.0%)로 나타났으며, ‘반대 한다’는 45.7%(반대 28.0%+매우 반대 17.7%)로 나타남

<그림 5-5> 현행 자부담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표 5-8> 현행 자부담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 수 (명)	찬성			반대			
			찬성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반대
전체		(300)	30.3	13.3	17.0	24.0	28.0	17.7	45.7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28.9	14.0	14.9	24.6	28.9	17.5	46.5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27.3	5.5	21.8	27.3	25.5	20.0	45.5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24.2	9.1	15.2	21.2	30.3	24.2	54.5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29.4	5.9	23.5	26.5	32.4	11.8	44.1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53.1	34.4	18.8	21.9	15.6	9.4	25.0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25.0	15.6	9.4	18.8	34.4	21.9	56.3

자부담 비율 증가/감소 정도에 대한 의견

- 자부담 비율 증가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n=91)를 대상으로 증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5%-10%’가 6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5%초과’(19.8%), ‘11%-15%’(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부담 비율 증가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n=137)들은 반대 정도에 대해 ‘1%-5%미만’이 4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폐지’(36.5%), ‘현행대로 5%’(2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9> 적정 자부담 비율 증가 정도

(단위: %)

		사례수 (명)	5% -10%	11%-15%	15%초과
전체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3)	69.7	12.1	18.2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15)	60.0	26.7	13.3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8)	62.5	0.0	37.5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10)	90.0	0.0	10.0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17)	47.1	29.4	23.5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8)	37.5	37.5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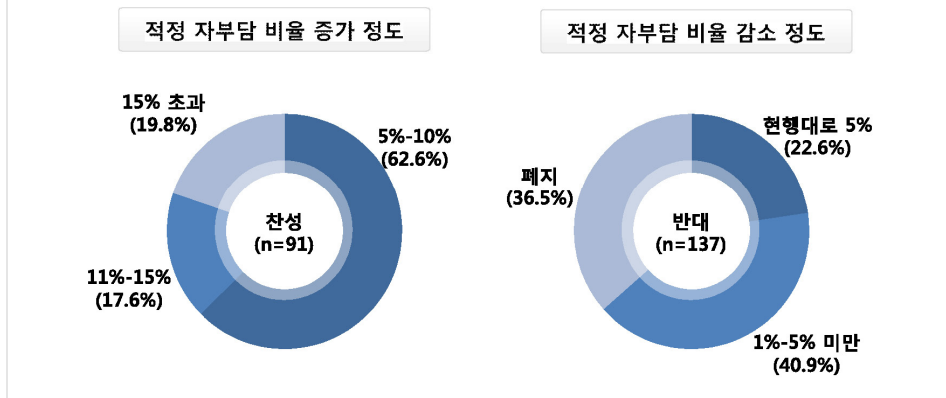
<표 5-10> 적정 자부담 비율 감소 정도

(단위: %)

		사례수 (명)	현행대로 5%	1%-5% 미만	폐지
전체		(137)	22.6	40.9	36.5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3)	18.9	43.4	37.7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5)	24.0	36.0	40.0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18)	33.3	33.3	33.3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15)	26.7	20.0	53.3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8)	37.5	50.0	12.5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18)	11.1	61.1	27.8

<그림 5-6> 자부담 비율 증가/감소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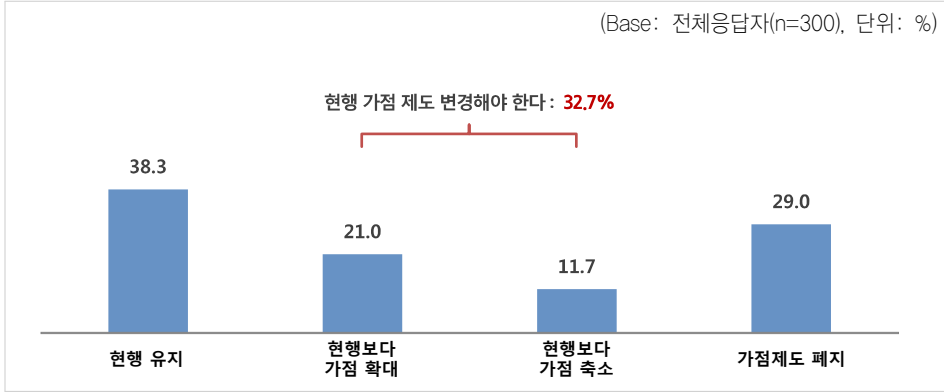
(Base: 자부담 비율 증가 찬성응답자(n=91), 단위: %) (Base: 자부담 비율 증가 반대응답자(n=137), 단위: %)



국가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예산 포함 시, 가점의 적정선

○ 국가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예산 포함 시 부여되는 가점의 적정선에 대해 ‘현행 유지’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가점제도 폐지’(29.0%), ‘현행보다 가점 확대’(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7> 국가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예산 포함 시, 가점의 적정선



<표 5-11> 국가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예산 포함 시, 가점의 적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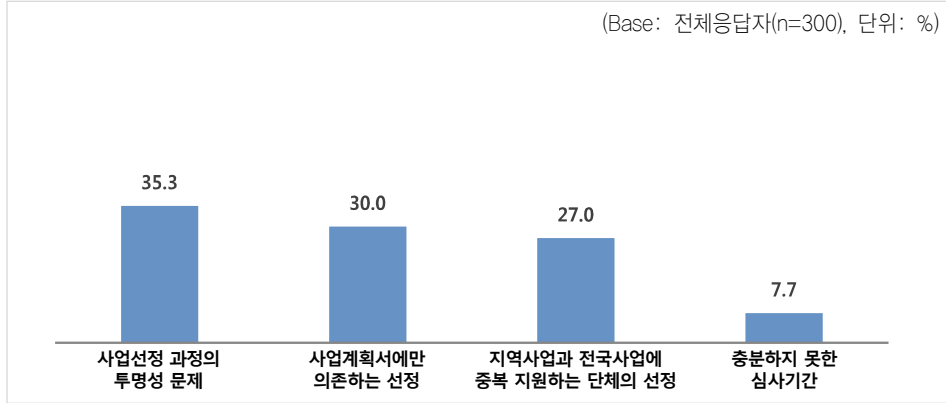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현행 유지	현행보다 가점 확대	현행보다 가점 축소	가점제도 폐지
전체		(300)	38.3	21.0	11.7	29.0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33.3	21.9	14.0	30.7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43.6	20.0	7.3	29.1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39.4	24.2	9.1	27.3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41.2	23.5	5.9	29.4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46.9	21.9	9.4	21.9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34.4	12.5	21.9	31.3

사업선정 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 공익사업 선정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3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업계획서에만 의존하는 선정’(30.0%), ‘지역사업과 전국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단체의 선정’(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8> 사업선정 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표 5-12> 사업선정 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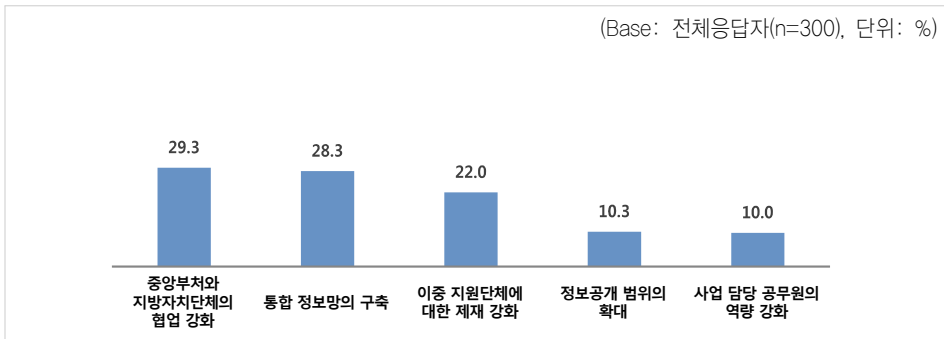
		사례수 (명)	사업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사업계획서에만 의존하는 선정	지역사업과 전국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단체의 선정	충분하지 못한 심사기간
전체		(300)	35.3	30.0	27.0	7.7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38.6	26.3	26.3	8.8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30.9	32.7	29.1	7.3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42.4	30.3	24.2	3.0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32.4	29.4	29.4	8.8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25.0	40.6	21.9	12.5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37.5	28.1	31.3	3.1

3. 사업집행 및 관리단계

□ 유사사업 지원 시, 문제 해결방법

- 공익사업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 동일 혹은 유사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는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강화’가 2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통합 정보망의 구축’(28.3%), ‘이중 지원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9> 유사사업 지원 시, 문제 해결방법



<표 5-13> 유사사업 지원 시, 문제 해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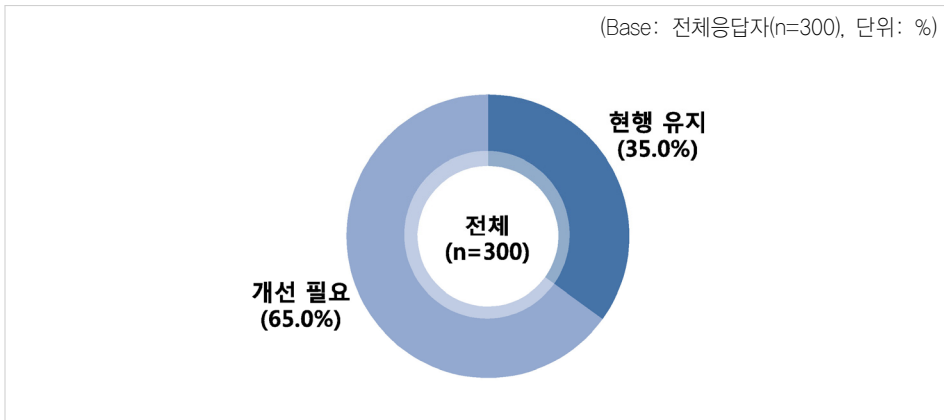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강화	통합 정보망의 구축	이중 지원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	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전체		(300)	29.3	28.3	22.0	10.3	10.0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28.1	28.1	27.2	9.6	7.0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21.8	29.1	25.5	10.9	12.7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45.5	21.2	15.2	12.1	6.1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23.5	38.2	14.7	17.6	5.9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25.0	31.3	21.9	3.1	18.8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40.6	21.9	12.5	9.4	15.6

□ 공익사업 추진 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

- 공익사업 추진 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35.0%, ‘개선 필요’가 65.0%로 나타남

<그림 5-10> 공익사업 추진 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



<표 5-14> 공익사업 추진 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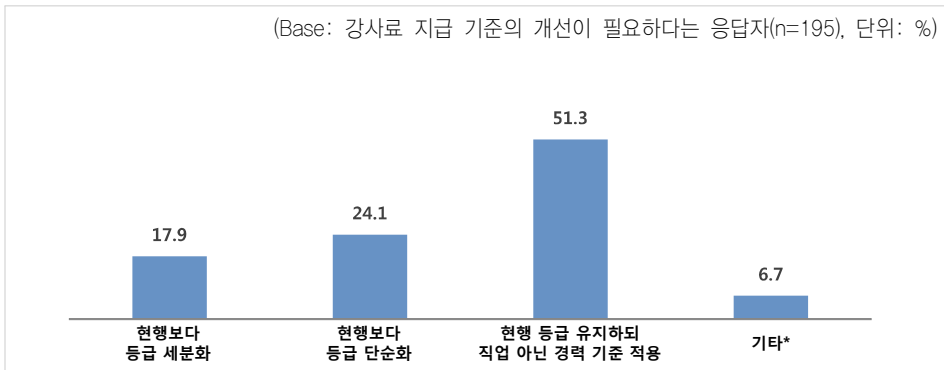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명)	현행 유지	개선 필요
전체		(91)	35.0	65.0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3)	41.2	58.8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15)	25.5	74.5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8)	21.2	78.8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10)	26.5	73.5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17)	34.4	65.6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8)	53.1	46.9

□ 강사로 지급 기준 개선 방향

- 강사로 지급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n=195)를 대상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등급 유지하되 직업 아닌 경력 적용’이 5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현행보다 등급 단순화’(24.1%), ‘현행보다 등급 세분화’(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1> 강사로 지급 기준 개선 방향



* 기타 의견으로는 ‘강사 자질에 대한 자체 판단’, ‘종합적 능력 고려’, ‘강의 내용에 따라’ 등이 있음

<표 5-15> 강사로 지급 기준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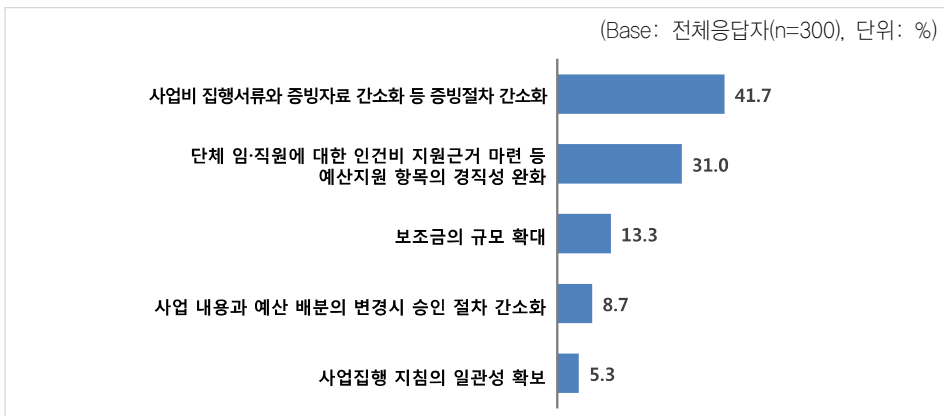
(단위: %)

		사례 수 (명)	현행보다 등급 세분화	현행보다 등급 단순화	현행 등급 유지하되 직업 아닌 경력 기준 적용	기타
전체		(195)	17.9	24.1	51.3	6.7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7)	19.4	29.9	41.8	9.0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41)	14.6	26.8	53.7	4.9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26)	30.8	15.4	50.0	3.8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25)	20.0	12.0	60.0	8.0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21)	4.8	28.6	61.9	4.8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15)	13.3	20.0	60.0	6.7

□ 집행 및 관리단계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 공익사업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절차 간소화’가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예산지원 항목의 경직성 완화’(31.0%), ‘보조금의 규모 확대’(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2> 집행 및 관리단계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표 5-16> 집행 및 관리단계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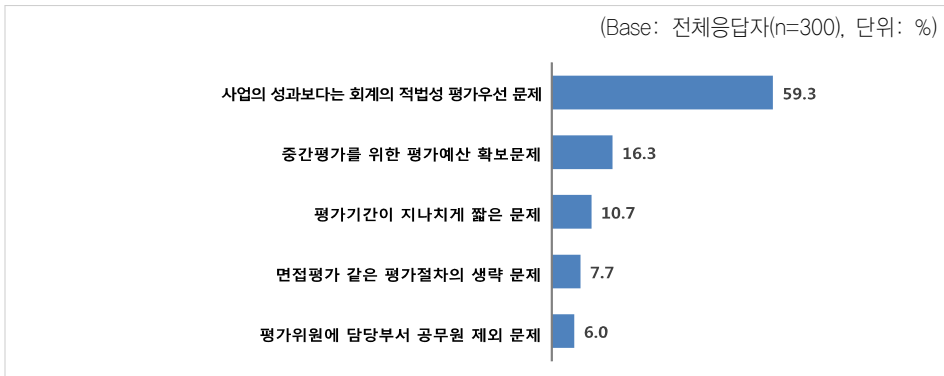
		사례 수 (명)	증빙 절차 간소화	예산 지원 항목의 경직성 완화	보조금의 규모 확대	사업 내용과 예산 배분의 변경시 승인 절차 간소화	사업 집행 지침의 일관성 확보
전체		(300)	41.7	31.0	13.3	8.7	5.3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43.9	34.2	12.3	5.3	4.4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32.7	30.9	14.5	10.9	10.9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36.4	27.3	24.2	6.1	6.1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44.1	35.3	2.9	14.7	2.9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50.0	21.9	18.8	9.4	0.0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43.8	28.1	9.4	12.5	6.3

4. 사업보고 단계

□ 사업보고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 공익사업 보고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업의 성과보다는 회계의 적법성 평가우선 문제’가 5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예산 확보 문제’(16.3%), ‘평가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문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3> 사업보고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표 5-17> 사업보고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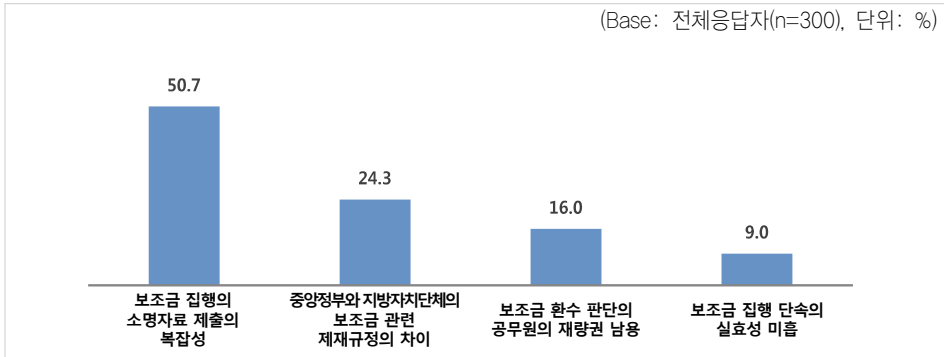
		사례 수 (명)	사업의 성과보다는 회계의 적법성 평가우선 문제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예산 확보문제	평가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문제	면접평가 같은 평가절차의 생략 문제	평가위원에 담당부서 공무원 제외 문제
전체		(300)	59.3	16.3	10.7	7.7	6.0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61.4	15.8	9.6	5.3	7.9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54.5	18.2	9.1	12.7	5.5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63.6	21.2	6.1	9.1	0.0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61.8	14.7	14.7	0.0	8.8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56.3	18.8	6.3	9.4	9.4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56.3	9.4	21.9	12.5	0.0

5. 사업정산 단계

□ 보조금 집행 관련 가장 큰 문제점

- 사업정산 단계에서 보조금 집행 관련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의 소명자료 제출의 복잡성’이 5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제재규정의 차이’(24.3%), ‘보조금 환수 판단의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4> 보조금 집행 관련 가장 큰 문제점



<표 5-18> 보조금 집행 관련 가장 큰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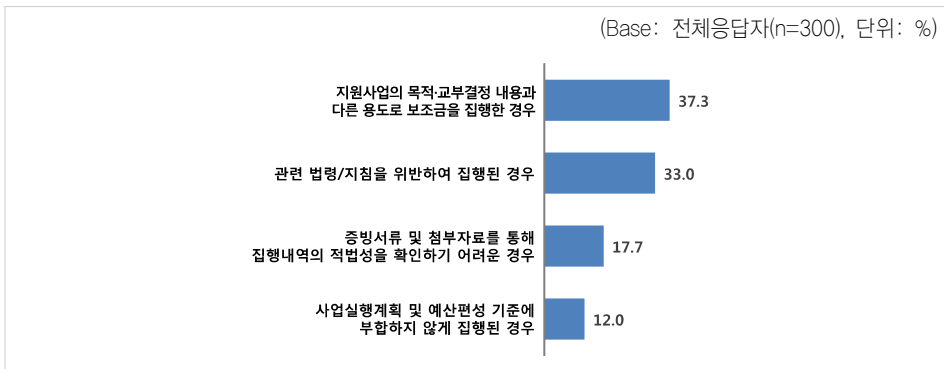
(단위: %)

사업유형	사례 수 (명)	보조금 집행의 소명자료 제출의 복잡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제재규정의 차이	보조금 환수 판단의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보조금 집행 단속의 실효성 미흡
전체	(300)	50.7	24.3	16.0	9.0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43.9	24.6	21.1	10.5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58.2	27.3	3.6	10.9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48.5	21.2	21.2	9.1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61.8	20.6	11.8	5.9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53.1	31.3	12.5	3.1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50.0	18.8	21.9	9.4

□ 정산단계의 제재규정 강화에 대한 의견

- 정산단계에서 제재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목적·교부 결정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된 경우’(33.0%), ‘증빙서류 및 첨부자료를 통해 집행내역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5> 정산단계의 제재규정 강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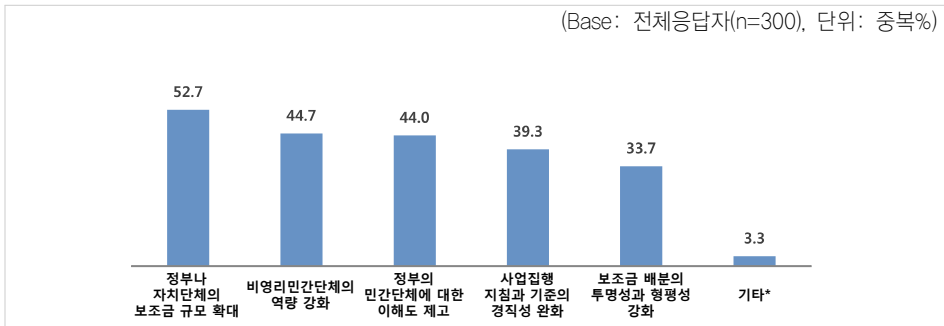
<표 5-19> 정산단계의 제재규정 강화에 대한 의견

		사례 수 (명)	지원사업의 목적·교부 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된 경우	증빙서류 및 첨부자료를 통해 집행내역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실행 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경우
전체		(300)	37.3	33.0	17.7	12.0
사업 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36.8	36.8	17.5	8.8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45.5	21.8	14.5	18.2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30.3	36.4	15.2	18.2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41.2	32.4	20.6	5.9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31.3	31.3	25.0	12.5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34.4	37.5	15.6	12.5

6. 기타

- 향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될 대안
 -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될 대안으로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규모 확대’가 52.7%(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 강화’(44.7%),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이해도 제고’(4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6> 향후 개선해야 될 대안(중복응답)



* 기타 의견으로는 ‘단체 운영에 대한 다양성 파악’, ‘공익사업 규정의 명확화’ 등이 있음

<표 5-20> 향후 개선해야 될 대안(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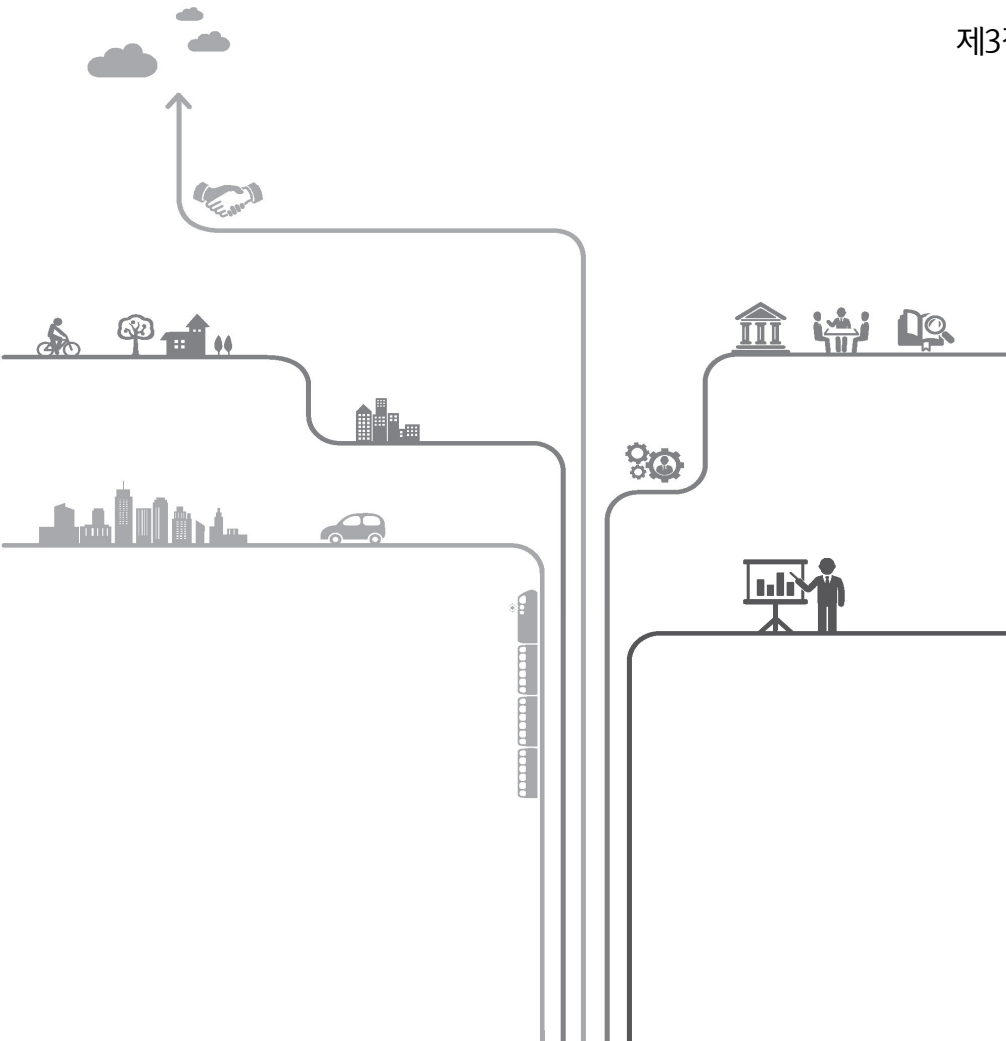
(단위: 중복%)

		사례 수 (명)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규모 확대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이해도 제고	사업집행 지침과 기준의 적직성 완화	보조금 배분의 투명성과 형평성 강화	기타
전체		(300)	52.7	44.7	44.0	39.3	33.7	3.3
사업유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4)	46.5	45.6	38.6	42.1	32.5	3.5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55)	56.4	45.5	41.8	36.4	41.8	3.6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33)	60.6	42.4	57.6	33.3	27.3	6.1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	(34)	52.9	35.3	47.1	38.2	32.4	2.9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32)	53.1	53.1	34.4	34.4	31.3	3.1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2)	59.4	43.8	59.4	46.9	34.4	0.0

제6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개선방향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행정적 측면
제3절 법적 측면



제6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개선방향

제1절 기본방향

1. 자부담 확대를 통한 사업의 자율성 확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존중하고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나¹⁾,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 발전저해, 단체의 관변화 등으로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므로 자부담의 의무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이 사업의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나,
 - 정부지원이 없으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존속할 수 없고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지 불분명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개입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지원과 개입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2. 통합성의 제고

- 정부의 민간공익지원사업 방향의 원칙과 전략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통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수반되어야 함

3. 형평성과 공정성 증진

- 특정 단체 편중 및 집권 정부의 정치적 기반에 따른 편향적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공개경쟁 체제를 확대하여야 함
- 정부와 비영리부문 간, 비영리부문 간 지원제도의 차등적 지원 조치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업의 성격이나 단체의 활동 내용이나 유형 등을 불문하고 공익활동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성격의 단체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촉구되어야 함

4. 공익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원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영역 존중이므로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제시하는 사업유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또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하는 사업을 중복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정부설립, 민관 운영방식, 반관반민 형식으로 독립재단이나 민간운동지원기금, NGO 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5.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공익지원 사업과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도 사업목표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공익지원 사업을 위한 총체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부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부담을 높혀 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6.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의 전환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행정의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파트너십 마인드가 부재하다는 점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정부의 지원대상인 시민사회와 시민으로 보는 낮은 수준에서 탈피하여, 거버넌스의 파트너이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공적인프라로 보는 마인드가 필요함
- 민간단체와 행정의 관계는 민간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매개로 연계된 계약관계에서 출발한, 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함
- 따라서 행정은 시민단체의 공모사업 집행을 감시한다는 관점이 아닌, 협력자의 입장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반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민간단체 역시, 행정의 불편함에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공익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업무를 이해하고 이에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함

7.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전략적 관점 반영

- 성과주의에 의한 시민사회에 대한 몰이해는 사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기대한다면 공익사업은 기반을 강화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정부는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종전과 같이 시민사회를 국민운동단체, 관변단체로 키워나가려는 마인드보다 정부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는 독립적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8. 시민단체 스스로의 노력 필요

- 영상물, 책자 등 홍보물과 공공 공간을 활용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 필요
-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행정시스템, 법률 등 제도개선, 인식의 전환 등을 위해 대변하고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함. 단체들끼리 자주 모이고 뜻을 모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함

제2절 행정적 측면

1. 사업준비, 선정 및 승인단계

- 사업분야 선정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사 반영
 -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분야를 결정함에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분야를 지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결정 사업유형 내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사업 분야의 선정시부터 민간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공익사업선정회가 참석토록 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임

- 지원사업 담당 주무부서의 인력 보충
 - 사업 선정 및 교부금 지원까지 촉박한 일정은 담당 주무부서의 사업 준비 및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짧은 사업기간으로는 장기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
 - 사업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심의 및 선정하는데 1개월의 짧은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사업선정에 한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 수준의 인력보강이 필요함

2. 사업집행 및 관리단계

- 집행지침 개선
 - 예산지원 항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데,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항목은 3개 항목, 21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의 경우에는 강사비, 회의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등 7개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준과 사용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목표와 사업은 다양한데, 예산항목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의 세부사항도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항목이 다양하게 편성되고 기준 또한 세밀하게 명시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해당단체나 사업의 특성,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 등에 따라 지출 가능한 항목으로 예산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
- 다만,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통제하는 기능 역시 보강하여야 할 것임
- 비현실적이거나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지침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됨
 - 이른바 식대, 강사료, 회의참석비, 교통비 등에서의 기준단가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여비, 강사료 지침은 시민사회운동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학력 등 다른 사회구조에 근거를 두고 책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직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강사료 지침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강사료에 대한 지급기준에 단체의 경력 기준 적용시 경력 확인 증빙에 대한 신뢰성 확보장치가 필요하며,
 - 사업 추진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부분은 임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하되, 단체의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매칭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현재 시민단체 측에서는 사업담당자 인건비를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단순인건비는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 이상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증빙서류의 간소화

- 중복적인 증빙서류 부착 등 과도한 문서작업으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은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 집행지침의 일관성 확보

- 지원한 공익사업에 대해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하여 사업수행 민간단체가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서류의 수정을 수차례 요구하고 재정지원 원칙이 공무원마다 달라지거나, 공무원이 재정지원을 늦게 지급함으로써 민간기관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피로감이 누적,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것임
- 특히,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아닌 장기간 사업을 수행해온 단체의 경우 비일관성의 문제로 인한 혼란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인 지침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변경으로 사업에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 자체의 모순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민간단체에 부담을 주는 공모사업의 추가지침과 지침변경의 문제임
- 정부보조금 사업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적 파트너십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공모사업지침서와 관련해서도 신뢰적 파트너십은 존중되어야 함
- 공모사업지침서의 중요성은 시민단체가 지침서를 통해 진행하려는 사업의 방향, 기준에 맞게 구상하여야 하기 때문이나, 공모사업 실행 이후, 추가적으로 제공된 지침서상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침서에 없는 내용들이 사업 중 또는 중간평가서, 후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방해하고 있음
 - 예로, 공모사업과 관련한 책자를 제작하고 최종 평가서에 이에 대한 지침서 내용대로 첨부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보조금 담당자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책자 제작비용이 조달청 기준에 의거해

야 한다는 것이었음

- 지침서 어디에도 조달청의 기준을 따르라는 설명은 없었으며, 실제 민간에서 조달청 기준에 맞추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민간단체의 입장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보다, 단순한 행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함
 - 뿐만 아니라, 지출 결의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증빙자료가 지침서의 기준과 달리 더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현재, 지침서의 기준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기능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수행지침서가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 및 보완이 필요함
- 제공된 공모사업지침서의 내용은 정부가 시민단체에게 한 사업의 약속이며, 시민단체는 정부의 약속내용에 따라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 도중 수정과 보완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를 당해연도부터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함
- 부득이한 변경의 경우라면, 사업 실행 전에 문건 통지를 통해 요청하며, 사업이 수행된 이후 요청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민주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책무성과 투명성 등 정부의 역할을 합리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과 시장과 시민사회가 ‘자치역량’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합리화와 시민사회의 자치역량을 결합시켜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 (Brinkerhoff, 19980)
- 정부의 보조금 사업이 활성화되고 시너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보완적인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적 파트너십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의 신뢰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유지할 장치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통합지침을 제정 중인 상황이

며, 다만 지침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현실적인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사업예산의 규모 확대

- 등록 단체들이 접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예산 규모가 늘지 않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 공익사업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 효과성은커녕 일회적인 행사나 단발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업예산 규모를 절대적으로 늘려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원사업의 양적규모가 확대되어야 협업이나 연속지원방식, 신생단체 지원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장주기에 맞는 지원모형, 단체별 규모에 따른 지원유형 개발 등 현재의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

3. 사업보고 및 사업정산단계

보조금의 환수, 반환, 감액의 제재 규정 보완

- 집행지침 위반시 제재에 있어 재량권 남용 역시 경계하여야 하는데, 현행 집행지침은 환수, 반환, 감액할 수 있는 제재규정에 대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예컨대, ‘환수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환수판단은 위반 정도, 경위 등 구체적인 전후사정과 해당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집행행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제1항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보조금 환수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의

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조금 환수가 동일한 사안에도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침과 담당공무원에 따라 매년 다르고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후에도 지침위반(단순인건비 1인당 3개월 이하)을 이유로 한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 시민단체는 불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보조금 유용 및 횡령의 실질적인 범죄행위는 적발하지 못하면서 기준 단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집행지침 위반을 “부당집행”이라는 통일적 용어를 통해 환수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단체화 동일한 비리단체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정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집행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4. 기타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활동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전문가의 손길과 자문으로 보강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서 세운 NPO 센터가 대부분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NPO들을 인큐베이팅 하고 세력을 키워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검토
 -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행정·회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중간지원조직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
 -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취약한 역량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

로 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치 공동회계 지원사업단을 신설하여 공모 사업 관련 사업비 집행 컨설팅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집행 기관에 대한 회계컨설팅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집행기관에 대한 회계컨설팅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게 함

- 홈페이지 등 공개된 공간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것도 제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안임
-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배정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박치성·한승준, 2009: 43-46)
- 이처럼 NGO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측면 때문에 민간공익지원 사업에서 NGO역량 강화 분야는 소외되고 있음
- 향후 공익민간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부문에 더욱 많은 지원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모사업에서 기획 사업 등으로 특정하여 분류하여 민간단체가 역량강화에 더 적극적으로 치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측면에서 공익지원사업의 전 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행정자치부도 지원 사업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원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협력자문단을 구성하여 민간단체의 사업개발, 사업추진, 회계 관리 등 공익사업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현장방문 컨설팅 제도 등을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단계별 지원체계를 보다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 NGO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고양하여야 함

□ 정보의 공개와 경험의 공유

○ 통합정보망의 구축

- 정부의 민간공익지원 사업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바로 평가와 환류과정임
- 웹기반으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기본적인 지원규모를 파악하고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통합정보망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NGO 상호학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고, 정보화 경험의 공유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질적인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

- 보조금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가 있지만 실제 공개 범위는 매우 협소한 상황임
- 행정자치부 민간공익지원사업의 경우 선정단체와 예산 규모 정도만 공개되어 있고, 공개된 외부기관의 평가자료에서도 개별 단체들이 사업 결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공개 범위를 신청단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로 대폭 확대하여야 함
- 정보공개로 인해 초기에는 민간단체들의 반발과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학습과정으로서의 평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정부의 공익지원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신규단체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
- 정보공개는 시민들에게도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정당성을 확인토록 해 주고,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NGO의 사회적 의의 및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시민참여의 새로운 기회 제공의 의미

를 갖게할 것임

대화와 소통의 채널 마련

-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소통 창구 개설
- 비영리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례적 대화 실시
-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공무원 교육 및 민관협력 담당 전문직제의 필요성

- 행정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의 특수성, 다양성,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와 거버넌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에서 시민사회와 정부, 양자 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연속성 있게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매개할 수 있는 인력개발이 필요함(가칭 협력관 채용을 제안)
-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중장기적인 지원방안 개선제도 마련

-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 구축
- 그 동안 제기되었던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안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 실시
- 문제 수준에 따른 지원사업 개선과제 체계화

제3절 법적 측면

1. 정책대상 집단의 자격 요건 현실화

□ 등록요건의 현실성 및 공공성 제고

- 단체등록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등록 요건이 현실을 반영하고 단체의 실제적인 사업수행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감안해서 등록요건을 개선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켜져야 할 것임
 - 예산이체 등 사업수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해야 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NPAS 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을 규정한 것은 사업신청-집행-정산 과정의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
- 형식상의 요건으로 상시 100명이상의 구성원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성 판단의 기준과 조직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단순히 구성원의 숫자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자격을 제한할 경우 잠재 역량이 큰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의 경우 단체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완화하여 상시구성원수가 10인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단체들을 공익활동에 포함하고 있음
- 상시 구성원 수의 완화를 통해 소규모 풀뿌리 단체나 혹은 단체가 아닌 주민모임도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공모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신생단체가 일정비율 선정되도록 제도화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주기에 맞는 다양한 지원제도 설계
 - 선정 시 자비부담의 가정비율을 낮추거나 자비부담의 차등화, 예를 들어 신생단체의 경우는 자비부담 적용 제외

- 그러나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단체의 공공성을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구성원 수의 요건을 완화하되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조건, 예컨대, 회비 납부 회원수 또는 예산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추가하는 등(이근주, 2000) 실제적인 요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령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있을 것’의 조건은 2년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 민간지원 사업의 사전 및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이 영리성을 배제한 비영리적 공익활동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공익사업을 공모하고 민간단체의 역량을 빌려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급하고 구매한다는 점에서 공공조달해위로서의 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활동의 정부조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박천일, 2011: 134)
- 따라서 보조금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은 공익활동 사업의 성패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행법 아래에서는 지원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단체들을 배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고, 역량이 부족한 단체가 당해연도의 사업의 선정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등록을 한 뒤, 선정 탈락 후에는 그 활동이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하는 등 단체등록 이후의 등록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명칭을 변경하거나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방안등을 고려하여야 함(박치성 외, 2009)
- 지원법 시행령에 단체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적용이 쉽지 않으며, 부적격 단체의 경우 등록 이후의 취소와 같은 조치도 필

요하지만 등록과정에서부터 선별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함

- 부적격 단체를 선별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정당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부, 시민사회, 관력학계가 모두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선별장치는 신뢰성 있는 정책평가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공익성테스트와 같은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협회와 같은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가 선별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박천일, 2011: 135)

2. 지원수단의 전환 및 확대

- 지역 NPO 지원센터와 같은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중간조직을 통한 지원
 - 일본의 NPO 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중간조직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운영,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임(박천일, 2011: 137-138)
 - 정책제언, 커뮤니티, 싱크탱크 기능, 장소, 시설, 기자재의 제공, 정보의 수집, 편집, 제공, 네트워크 기능, 협동 및 협업 기능, 상담, 컨설팅 기능, 운영관리 기능, 지역자원의 발굴 및 중개기능 등을 수행함
 -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NPO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이러한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은 사회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조직화를 통한 주민운동의 주체역할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단체간 협동과 연대,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시장 영역 간 교류와 공동체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음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NPO 센터를 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내 NPO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지원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3. 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방식의 전환

- 민간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사후감독과 평가가 필요하지만 감독이나 평가활동, 절차가 비영리단체의 자율성이나 자발적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후감독이나 평가자체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중간지원조직-민간단체 상호간의 참여형 또는 쌍방향 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임
- 둘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민사회 스스로가 그들의 대표기관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평가의 공정성, 결과의 수용성 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박천일, 2011: 145)
- 정부는 사업에 선정된 모든 단체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

리 민간단체 지원센터를 평가함으로써 정부 보조금의 합법적 사용을 담보할 수 있음

- 셋째,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매년 평가주체가 달라짐으로 인해 평가방식, 평가기업, 평가지표의 구성과 평가논리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현행의 방식을 유지할 경우 최소한 5년 이상 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박천일, 2011: 146)

□ 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평가 방안 마련

- 현재의 지원사업 평가는 단순수치 중심의 결과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수치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의사전달체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원금의 쓰임만 증명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성과중심의 보고체계라 보기 어려움
- 국세청의 공시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시를 통해 단체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투명성의 증명은 재무제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공시를 통한 사업수행의 결과는 기부금을 얼마나 많이 모집했는가를 보여줄 뿐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설명될 뿐임
- 대부분의 정부지원기관에서도 금전적 지원내역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단체는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증명에만 힘을 쏟게 되고, 결국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다각도에서 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평가기법의 측면에서 경량적 지표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경성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차년도 사업의 감점 형태보다는 일정기간 사업신청자격을 유보한다면 지 다른 적절한 제재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민간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실효적 지원제도 도입

- 민간공익활동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이 되는 비영리단체가 과연 어떠한 지원제도를 원하고 있는지, 전국 조직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지역별 비영리단체의 조직 및 활동범위가 가지는 특성 등을 감안한 실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 공간 활용 보장
- 시민단체에 유휴공간 활용 혜택 등 행정지원제도를 확대하여야 함
 - 공공건물의 위치는 대체로 시민들의 접근성에서 최적합지이며 지역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하는 시민사회가 시민들과의 교류를 증대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높이는 장기적 공간으로 적합한 장소임
 -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유휴공공건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사회의 역량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의 입장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방치된 공간을 시민들의 공익활동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치임
 - 지원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무상 또는 소정의 사용료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무실 또는 회의실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유휴공공건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활용방안을 만들어 오히려 관이 민간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유휴공공건물을 공익활동의 중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함
 - 그 동안은 유휴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찾아서 만들어 가는 과

정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렇다 보니 시민사회는 정보의 부족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의 발굴이 어려웠고, 오랜 시간 방치되어 지역의 흉물로 자리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이에 더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수정 보완하여 공익적인 시민사회가 유휴공공건물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 운영의 주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통신료 감면제도

- 현행 우편요금 감면제도가 실효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통신료 감면제도를 지원법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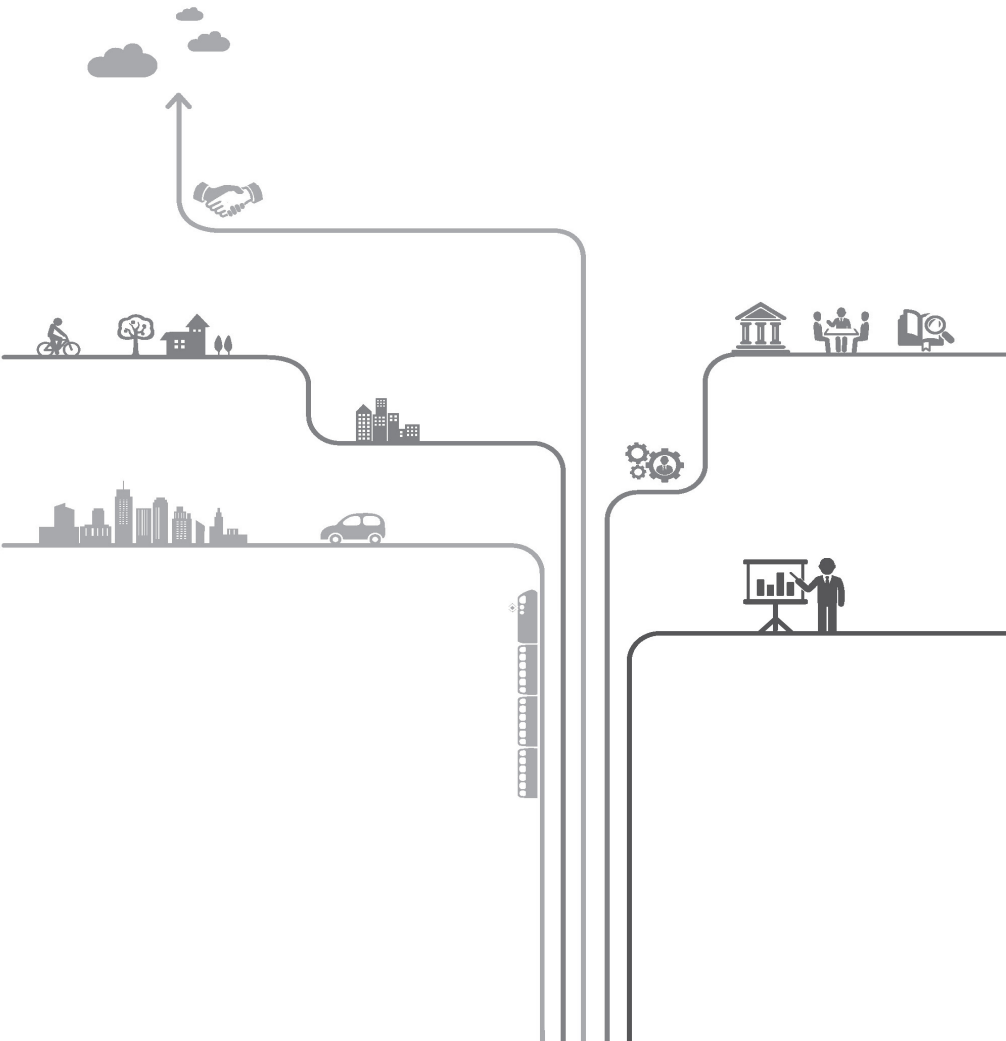
보조금 지원 외의 세제 혜택 등 보완

- 현행법에 의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의 기부금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30% 기준을 한도로 이루어져 개인 또는 단체의 고액기부가 이루어질 경우 기부금 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고액기부자들의 기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활동에 대한 사회전반의 움직임에 역행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기부금단체, 재정기부금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기부금 소득공제 단체지정으로 단일화하고 소득공제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 재정기부금 세액공제한도 30%를 50%이상으로 인상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자가 받는 세제혜택을 돌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세액공제한도를 인상하는 경우 제도의 악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공공·공익채널을 통한 비영리단체 홍보 및 방영권 지원
 - 공공·공익채널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자신의 조직 및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후원자 모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영권 또는 홍보비를 지원함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정부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공익서비스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민주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비영리, 비정부 조직이라는 특성은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도덕적 우위를 제공하지만 역설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익적 시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NGO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 접근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업이기도 하기 때문임
 - 그러나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비전과 정책원리를 제시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
- 지원법에 근거한 정부의 지원은 국고보조금을 공익사업비에 지원하는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으로 조세감면과 우편요금 감액 그리고 행정지원(후원, 명칭, 승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업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음

○ 사업신청 단계

- 사업 선정 및 교부금 지원까지 촉박한 일정은 담당 주무부서의 사업 준비 및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짧은 사업기간으로는 장기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

○ 사업선정 및 승인 단계

- 사업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심의 및 선정하는데 1개월의 짧은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사업 선정에 한계 존재
- 신청단체는 많은데 비하여 심사위원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밀한 심사가 어렵고 이에 따라 심사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사업집행 및 관리 단계

-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집행이 경직되어 이를 정부평가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제약이 발생함
- 사업집행을 위한 보조금의 규모가 적어 사업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일회성 행사로 사업을 끝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보고 단계

- 중간평가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3명 정도이고 대개 기타 민간협력 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 사업에 대한 평가가 보조금의 적법한 사용과 같은 회계평가에만 집중되어 있음

○ 사업선정 단계

-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진사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방식은 차년

도 사업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진행, 전년도의 평가결과는 차 년도의 사업선정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침

□ 제도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사업신청 단계

- 사업신청 단계의 문제점 분석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국 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근거한 사업예산 편성'이 45.0%, '신청사 업 국고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 의무'(26.3%), '단체별 1개 사업만 신 청이 가능'(16.3%) 순으로 나타남
- 제도개선을 위해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가 30.7%, '보조사 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단체'(19.7%), '단체활동과 관련되 어 불법 시위주도 사실이 있는 단체'(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선정 및 승인 단계

- 공익사업 신청단계에서의 가점과 감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가점 및 감 점제도 현행 유지'가 55.0%로 가장 많았고, '가점 및 감점제도 폐지'는 17.3%로 나타남
- 공익사업 추진 시, 사업선정 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부담금액 마련'이 39.7%,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21.3%), '사업수행을 위한 컨소 시엄의 어려움'(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행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5%)을 높여 정부의존도를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30.3%, 반대 45.7%로 나타남
- 국가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예산 포함 시 부여되는 가점의 적정선에 대해 '현행 유지'가 38.3%, '가점제도 폐지'(29.0%), '현행보다 가점 확 대'(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선정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 제'가 35.3%, 그 다음은 '사업계획서에만 의존하는 선정'(30.0%), '지역

사업과 전국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단체의 선정'(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집행 및 관리단계

- 동일 혹은 유사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는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강화'가 29.3%, '통합 정보망의 구축'(28.3%), '이중 지원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익사업 추진 시, 강사로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35.0%, '개선 필요'가 65.0%로 나타남
- 강사로 지급 기준의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등급 유지하되 직업 아닌 경력 적용'이 51.3%, '현행보다 등급 단순화'(24.1%), '현행보다 등급 세분화'(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익사업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절차 간소화'가 41.7%, '예산지원 항목의 경직성 완화'(31.0%), '보조금의 규모 확대'(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보고 단계

- 공익사업 보고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업의 성과보다는 회계의 적법성 평가우선 문제'가 59.3%,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예산 확보 문제'(16.3%), '평가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문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정산 단계

- 보조금 집행 관련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의 소명자료 제출의 복잡성'이 50.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제재 규정의 차이'(24.3%), '보조금 환수 판단의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산단계에서 제재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목적·교부 결정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37.3%,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된 경우'(33.0%), '증빙서류 및

첨부자료를 통해 집행내역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될 대안
 -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규모 확대'가 52.7%,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 강화'(44.7%),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이해도 제고'(4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원사업 개선방안

-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자부담 확대를 통한 사업의 자율성 확보, 둘째, 정부의 민간공익 지원사업 방향의 원칙과 전략에 따른 제도의 통합성 마련, 셋째, 형평성과 공정성 증진,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다섯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여섯째,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의 전환, 일곱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전략적 관점 반영, 여덟째, 시민단체 스스로의 노력 필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행정적 측면

- 사업 준비, 선정 단계에서 정부는 지원사업 단체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경계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분야 선정단계에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담당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야 함
- 사업집행 및 관리 단계에서는 예산지원 항목의 경직성 해소 및 증빙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집행지침의 개선,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야 함
- 사업보고 및 정산 단계에선, 보조금의 환수, 반환, 감액의 제재 등을 명령할 때 재량권의 남용을 경계하여야 함
- 그 밖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서비스, 이를 보완할 지원체계의 구축, 통합정보망의 구축을 통한 정보의 공개 확대, 민관협력을 위한 소통의 채널 확대,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부서

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요구됨

○ 법적 측면

- 상시구성원수의 완화 등으로 통해 정책 대상 집단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할 필요
- 지역 NPO 지원센터와 같은 독립적인 조직의 설립을 법제화함
- 민간 공익활동 및 비영리 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 방식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센터 또는 민관단체 상호간의 참여형 평가기관을 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회계 중심 평가제도를 다변화 함
-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 공간 활용 보장, 통신료 감면 제도, 보조금 지원 외의 세제 혜택 보완, 공공채널을 통한 비영리민간단체 홍보 지원 등의 실효적 지원 규정 보완

제2절 정책적 제언

- 민간공익활동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관성 있게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 형태의 법제 개선을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법의 제정은 예산 부분이나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정비하고, 모든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완화

- 제2조(정의)의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되, 신생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4. 상시 구성원수가 50인 이상일 것
 - 5. 최근 2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비영리 민간단체 육성의 기본계획 및 지원 계획 수립

- 제3조(기본방향) 조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추상적이므로 비영리 민간단체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을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에 신설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3조의 2(비영리민간단체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 3(시·도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독립기구·기본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지원법 제3조의 4를 다음의 내용으로 신설하되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 역시 검토를 통해 신설하여야 함

– 제3조의 4(비영리민간단체위원회)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민간단체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및 비영리민간단체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예산 등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사업의 조정·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비영리민간단체 발전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2.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조정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발전정책을 추진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 근거 법률의 정비

- 보조금은 통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별법이 지원하는 별도의 민간단체에 관한 법률(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폐지 내지 해당 보조금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운영경비 지원규정 마련

- 비영리 민간단체에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만큼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사업비만을 규정하고 있던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
- 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의 근거 없는 운영이 교부를 금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둘 경우 운영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

□ 지원사업 분야의 선정과정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의견 반영

- 지원사업 분야의 선정과정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지원법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 민간단체의 자부담 비율 증가

-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원규모의 확대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원금액이 확대될수록 민간단체는 정부의존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단체가 가능한 독자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자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음
 - 2015년의 경우 의무적 자부담(5%이상) 부과로 비율에 따른 가점을 자부담 10~14% 1점, 20% 이상 3점을 부여하는 등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조율은 2013년 77.7%, 2014년 84.5%, 2015년 85.7%로 증가 일로에 있을 뿐 감축되지 못하고 있고,
 - 2016년 보조율부터 70%로 감축한 후 6년간 5%씩 매년 보조율을 낮추고, 보조금 규모도 매년 5%씩 5년간 30% 수준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음. 다만 타 단체들과의 보조금 감축 수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2016년 보조금 감축 규모를 10%로 함
- 현행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5%)을 높여 정부의존도를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한다’는 30.3%(매우 찬성 13.3%+찬성 17.0%)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24%로 나타났고 자부담 비율 증가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n=91)를

대상으로 증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5%-10%’가 6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5%초과’(19.8%), ‘11%-15%’(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기부금법의 개정,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감면과 행정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간접적 방식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현행 법령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간접지원 관련규정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간접적 지원방식으로서의 점진적 전환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제10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통신비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제11조(우편요금 및 통신비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단,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경영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제11조의 2(경영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제11조의 3(교육훈련 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임대료 지원 및 국공유 시설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공익공공채널을 통한 홍보 및 방영을 위한 ‘홍보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제11조의 4(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시설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 국공유 시설 임대 지원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검토하여 무상임대 보다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료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 비영리민간단체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제11조의 5(비영리민간단체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도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인 등의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 제11조의 6(비영리민간단체 발전기금의 조성 등) ① 정부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금융기반 조성과 비영리민간단체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출연금
3.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비영리민간단체의 금융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 강상욱. (2001).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경훈·최창수. (200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시·도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동춘 외. (200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성공회대학교.
- 박상필. (1999).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계. 한국행정학보 33(1).
- 박상필. (2000). NGO 재정확충방안: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천일. (20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개선방안-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충훈·김연수. (2002). NGO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방안
- 신광영. (1999). 비정부조직과 국가정책: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8(1). 한국행정연구원.
- 임승빈. (2005). 서울시와 비영리민간단체의 파트너십강화와 역량평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지방자치연구센터·한국행정학회.
- 장수찬. (2013).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간지원기관 전략을 중심으로. NGO연구 8(1).
- 정광호. (2004). 외부의 재정지원이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4): 85-105.
- 정예슬·김현. (2012). 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관변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217-250.
- 주성수. (1999).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의 주요 쟁점과 제정방향. 사회복지 142: 31-45.
- 주성수·박영선·김이경. (2014).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 행정자치부. (2015).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내역.
- 행정자치부. (2015).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행정자치부. (201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 Boris, E. T. (1999). Introduction In E. T. Boris & E. Steuerle (Eds.). *Nonprofits & government: Collaboration and conflict*. 3-29.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 Douglas, J. (1987). The political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by Walter W. Powell (ed). *The nonprofit sector*. New Haven: Yale Univ. Press.
- Farrington, John & Bebbington, Anthony. (1993). *Reluctant Partners*. London: Routledge.
- Ferris, James M. & Elizabeth Graddy. (1989). Fading distinctions among the nonprofit, government, and for-profit sectors. In Virginia A. Hodgkinson and Richard W. Lyman(eds.). *The future of the nonprofit sector*. 123-139.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Gazley, B. & Brudney, J. L. (2007). The purpose (and perils) of government-nonprofit partnership.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3):389-415.
- Gray, A. (2003). *Collaboration in public services: The challenge for evaluat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Grønbjerg, (1993). *Understanding nonprofit funding: Managing revenues in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s* (1st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Huxham, C. (1993). Pursuing collaborative advantage.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44(6): 599-611.
- Kramer, Ralph M. (1981).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umar, S. Kant, S. & Amburgey, T. L. (2007). Public agencies and collaborative management approaches: Examining resistance among administrative professionals. *Administration & Society*. 39(5): 589-611

- Lipsky and Smith (1989). Nonprofit organizations government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4(4).
- Saidel, J. R. (1991). Resource interdepend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genc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6): 543-553
- Salamon, Lester. M. (1987). Of Market Failure, Voluntary failure, and Third-party Government.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6(1).
- Shaw, M. M. (2003). Successful collaboration between the nonprofit and public sector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4(1): 107-120.
- Weisbrod, B. A. (1988). *The Nonprofit Economy*. MA: Harvard University Press.